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486-01



■ 정책보고서 2015-22

##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강혜규 · 정홍원 · 함영진  
권소일 · 김지민 · 오다은 · 민진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조정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권소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민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인턴

정부는 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에 두는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사회보장 분야의 예산은 110조를 넘어 정부 예산의 30%에 이른다. 예산 규모와 함께 사업의 양적 증가도 병행되면서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복지사업 수의 증가와 사업 세분화는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 수혜, 수혜자간의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행정 부담, 유사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속적인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국무총리실, 2009.6.15. 보도자료)'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간 연계, 조정의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적·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사업의 통합·조정·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3)」를 수행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기반한 유사 사회보장사업간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그 후속 작업의 성격으로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착수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사업의 개발·기획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미진하다.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도 사업간의 중복 정비, 조정·연계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중앙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간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성·중복성을 최소화한 사업 기획,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사업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사업 대상의 특성이 동일(유사)하고, 사업 내용(목적 및 기능)이 중복 혹은 유사한 지자체 사업을 파악하였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보충적 서비스'가 다수 운영중이므로, 지자체의 재량권 및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함을 고려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을 배경으로 운영중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의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사업을 파악함으로써, 정비가 필요한 사업의 단초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강혜규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 원의 정홍원 연구위원, 권소일 연구원, 김지민 연구원, 오다은 연구원, 민진아 연구인턴,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 함영진 연구위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지자체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협조해주신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분들과 유익한 문제 제기와 방향 제시에 기여해 주신 학계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 목 차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11</b>
제1절 연구의 배경 .....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7
<b>제2장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관련 논점 및 제도 현황 .....</b>	<b>21</b>
제1절 유사중복 관련 주요 개념 및 쟁점 .....	23
제2절 복지사업 운영의 중앙-지자체 분담에 대한 논의 .....	32
제3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	42
<b>제3장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b>	<b>61</b>
제1절 분석 범위 및 절차 .....	63
제2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결과 .....	69
제3절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결과 .....	84
<b>제4장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방안의 모색 및 정책 과제 .....</b>	<b>147</b>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방안 검토 .....	149
제2절 정책 제언 .....	156
<b>참고문헌 .....</b>	<b>169</b>

## 표 목차

〈표 2-1-1〉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평가 및 조정 기준 .....	26
〈표 2-1-2〉 유사성이 발견된 중앙 사회보장사업 20개 사업군과 조정안 .....	27
〈표 2-2-1〉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복지분야 분권화 주요정책) .....	38
〈표 2-2-2〉 사회복지부문의 역할변화 비교 .....	39
〈표 2-3-1〉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평가 기준 .....	47
〈표 3-1-1〉 지자체 자체복지사업 데이터의 검토 항목 .....	64
〈표 3-1-2〉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유형 분류(10대 영역 82개 유형) .....	67
〈표 3-2-1〉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	70
〈표 3-2-2〉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복지사업의 1건당 평균예산액 .....	71
〈표 3-2-3〉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360개, '14년 기준) 및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15년 기준) 비교 .....	72
〈표 3-2-4〉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82개 유형별 현황 .....	74
〈표 3-2-5〉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의 대상별 현황 및 예산 .....	78
〈표 3-2-6〉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대상별 현황 및 예산 비율 비교 .....	78
〈표 3-2-7〉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대상의 생애주기별 현황('15년 3월 기준) .....	79
〈표 3-2-8〉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 대상의 생애주기별 현황 비교 .....	80
〈표 3-2-9〉 시군구 자체복지사업의 대상 특성별 현황('15년 3월 기준) .....	81
〈표 3-2-10〉 시군구 자체복지사업의 지원유형별 현황('15년 3월 기준) .....	82
〈표 3-2-11〉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지원유형별 현황('14년 기준) .....	82
〈표 3-2-12〉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자체복지사업 현황 .....	83
〈표 3-3-1〉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현황 .....	85
〈표 3-3-2〉 중앙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사업 유형별 현황 .....	86
〈표 4-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	151
〈표 4-1-2〉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협의·조정 사례 .....	152

## 그림 목차

[그림 2-3-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검토 영역 예시 .....	54
--------------------------------------	----

## 1. 연구의 개요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간 연계, 조정의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옴.

- ‘사회보장사업이 분절적,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강혜규 외, 2015: 1)해왔고,
- 이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이의 후속 작업으로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착수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사업의 개발·기획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미진
-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도 사업간의 중복 정비, 조정·연계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간에도 조화롭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사성·중복성을 최소화한 사업 기획,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에 착안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사업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평가함.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사업 대상의 특성이 동일(유사)하고, 사업 내용(목적 및 기능)이 중복 혹은 유사한 지자체 사업을 파악
  - 지자체 사업의 경우 ‘보충적 서비스’가 다수 운영중이므로, 지자체의 재량권 및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함을 고려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유형을 감안한 조정방안을 모색, 제시함.
  - 사회보장기본법을 배경으로 운영중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의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사업을 파악함으로써, 정비가 필요한 사업의 단초를 가늠

2. 주요 연구결과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운영 실태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시도 분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시도가 기획하고 시군구에서 함께 예산을 분담하여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시도매칭 사업, 시군구가 기획,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시군구사업으로서, (수집된 자료로 파악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총 5,891개이며, 시도사업 521개,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1,076개, 시군구사업 4,294개
  -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64,826억원으로서, 시도사업 3,668억원,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53,086억원<sup>1)</sup>, 시군구사업 8,072억원
  - 사업 수에서는 시군구 자체사업이 2/3 이상을 차지하지만, 예산기준의 비중은 시도가 기획하고 다수의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1)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은 ‘총계’(‘순계’가 아닌) 기준으로서, 시군구 부담분이 이중 계상될 수 있음.

### 이 큰 비중

○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실태 분석(20015.3)의 사업 유형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업 수 기준으로는 생활지원 유형의 사업이 2,86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

- 다음으로는 문화여가 582개, 보호돌봄 544개, 건강의료 370개, 고용 352개, 재해보상 345개, 생계 344개, 교육 241개, 주거 163개, 요양돌봄 89개의 순

〈요약표 1〉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사업 수 (개)				예산 (억원)			
	총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총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전체	5,891	521	1,076	4,294	64,826	3,668	53,086	8,072
보호돌봄	544	62	162	320	14,181	958	12,456	767
생활지원	2,861	261	520	2,080	31,446	1,521	26,700	3,225
교육	241	9	56	176	741	16	587	138
건강의료	370	25	59	286	788	65	569	154
요양돌봄	89	11	33	45	1,103	81	863	159
주거	163	2	25	136	602	9	411	182
고용	352	55	68	229	4,674	446	3,567	661
문화여가	582	47	83	452	7,346	209	6,194	943
생계	344	27	61	256	2,086	239	1,292	555
재해보상	345	22	9	314	1,859	124	447	1,288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수행 경향은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데, 중앙사업이 주거-생계-교육(예산 기준), 건강의료-고용-생활지원(사업 수 기준)의 비중이 큰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은 생활지원-보호돌봄-문화여가(예산 기준), 생활지원-문화여가-보호돌봄(사업 수 기준)에 집중

- 개략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사업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경향

4 사회보장사업의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요약표 2〉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360개, '14년 기준) 및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15년 기준) 비교

	중앙정부 사업(360개)				지자체 자체사업			
	사업 수 (개)	(%)	예산 (억원)	(%)	사업 수 (개)	(%)	예산 (억원)	(%)
보호·돌봄	39	(10.8)	57,250	(10.7)	544	<b>(9.2)</b>	14,181	<b>(21.9)</b>
생활지원	47	<b>(13.1)</b>	3,960	(0.7)	2,861	<b>(48.6)</b>	31,446	<b>(48.5)</b>
교육	43	(11.9)	90,490	<b>(16.9)</b>	241	(4.1)	741	(1.1)
건강의료	67	<b>(18.6)</b>	69,290	(13.0)	370	(6.3)	788	(1.2)
요양·돌봄	16	(4.4)	10,940	(2.0)	89	(1.5)	1,103	(1.7)
주거	34	(9.4)	151,190	<b>(28.3)</b>	163	(2.8)	602	(0.9)
고용	52	<b>(14.4)</b>	15,290	(2.9)	352	(6.0)	4,674	(7.2)
문화여가	6	(1.7)	830	(0.2)	582	<b>(9.9)</b>	7,346	<b>(11.3)</b>
생계	29	(8.1)	96,370	<b>(18.0)</b>	344	(5.8)	2,086	(3.2)
재해 보상	27	(7.5)	39,080	(7.3)	345	(5.9)	1,859	(2.9)
계	360	(100.0)	534,690	(100.0)	5,891	(100.0)	64,826	(100.0)

주: 1) 괄호안은 각각 전체 사업 수, 총 예산액에서 각 영역별 수치가 차지하는 비율

2) 중앙정부 사업예산은 '14년 기준 국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교부금등)를 포함, 건강보험사업 및 국세감면 등 15개 사업은 미포함

3)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계" 기준임(시도-시군구 매칭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중복계상)

자료: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강혜규 외(2015: 36).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현황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 360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총 1,496개, 9,997억원으로 확인

- 사업 수로 보면, 자체사업 수가 가장 많은 생활지원 영역에서 374개, 다음으로는 보호돌봄 영역 219개, 생계 영역 219개
-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유사 지자체 사업 중 보호돌봄 영역 사업이 36.9%를 차지했고, 생활지원 영역 16.3%, 생계영역 16.1%로서, 세 영역이 유사성이 있는 사업 중 2/3를 차지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영역별로 총 사업 대비 유사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유사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은 요양돌봄 영역(사업 수 기준 82.0%, 예산 기준 92.1%), 주거 영역(사업 수 기준 81.6%, 예산 기준 96.2%), 교육(사업 수 기준 65.1%, 예산 기준 72.7%), 생계(사업 수 기준 63.7%, 예산 기준 77.3%), 건강의료(사업 수 기준 51.1%, 예산 기준 70.2%)의 순

〈요약표 3〉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현황

	지자체 자체사업 (A)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성 있는 지자체 사업 (B)				유사사업 비율 (B/A*100)	
	사업 수(개)	(%)	예산 (억원)	(%)	사업 수(개)	(%)	예산 (억원)	(%)	사업 수 (%)	예산 (%)
보호·돌봄	544	(9.2)	14,181	(21.9)	<b>219</b>	<b>(14.6)</b>	<b>3,684</b>	<b>(36.9)</b>	40.3	26.0
생활지원	2,861	(48.6)	31,446	(48.5)	<b>374</b>	<b>(25.0)</b>	<b>1,626</b>	<b>(16.3)</b>	13.1	5.2
교육	241	(4.1)	741	(1.1)	157	(10.5)	539	(5.4)	<b>65.1</b>	<b>72.7</b>
건강의료	370	(6.3)	788	(1.2)	188	(12.6)	553	(5.5)	<b>51.1</b>	<b>70.2</b>
요양돌봄	89	(1.5)	1,103	(1.7)	73	(4.9)	1,016	(10.2)	<b>82.0</b>	<b>92.1</b>
주거	163	(2.8)	602	(0.9)	133	(8.9)	579	(5.8)	<b>81.6</b>	<b>96.2</b>
고용	352	(6.0)	4,674	(7.2)	93	(6.2)	356	(3.6)	26.4	7.6
문화여가	582	(9.9)	7,346	(11.3)	21	(1.4)	30	(0.3)	3.6	0.4
생계	344	(5.8)	2,086	(3.2)	<b>219</b>	<b>(14.6)</b>	<b>1,612</b>	<b>(16.1)</b>	<b>63.7</b>	<b>77.3</b>
재해 보상	345	(5.9)	1,859	(2.9)	19	(1.3)	2	(0.0)	5.5	0.1
계	5,891	(100.0)	64,826	(100.0)	1,496	(100.0)	9,997	(100.0)	25.4	15.4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의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고, ‘급여유형(제공형태, 급여·서비스·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별

- 각 사업의 세부 급여내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일부가 유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제시하고 유사사업으로 분류
- 조정필요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상호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 6 사회보장사업의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 세부 사업유형(82개 유형)별로 중앙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지자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된 사업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었으며(155개, 158억원), 다음으로는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98개, 268억원), 생활자금 대출(84개, 397억원), 주택시설 개선(76개, 113억원), 장수수당(74개, 394억원)

- 보호돌봄 영역: 보육교사 지원(58개, 2,043억원), 아동 돌봄 지원(42개, 189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37개, 159억원)
- 생활지원 영역: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98개, 268억원), 장수수당(74개, 394억원), 출산장려 지원(37개, 33억원), 폭력 피해·예방 지원(32개, 20억원)
- 교육 영역: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44개, 214억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43개, 144억원), 장애인 교육 지원(35개, 22억원)
- 건강·의료 영역: 건강보험료 지원(155개, 158억원)
- 요양·돌봄 영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45개, 821억원)
- 주거 영역: 주택시설 개선(76개, 113억원), 에너지(난방) 지원(38개, 379억원)
- 고용 영역: 노인 일자리(53개, 183억원)
- 생계 영역: 생활자금 대출(84개, 397억원), 긴급구호 지원(59개, 528억원), 생활비용 지원(42개, 393억원), 수당 지원(34개, 293억원)

### □ 유사사업 조정기준의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부여된 세부 과업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중인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사업 분야를 검토하고, 관련한 전국 사례의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을 기초로하여 조정 필요사업의 범위를 파악

- “2013년 이후 사보위 사무국의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된 지자체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해당 사업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요청 과업을 통해,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업 유형을 검토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정홍원 외, 2014)」에 제시된 협의·조정 기준을 참조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에 기초하여 도출한 조정 필요사업

- 국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74개사업, 393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생활지원	장수수당	70	383
	장수수당, 호도수당	4	10

- 시행 예정 국가사업과의 중복적 사업(192개사업, 838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교육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22	108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44	213
주거	주거비 지원	12	26
	주택시설 개선	76	113
	에너지(난방) 지원	38	378

- 사회보험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163개사업, 219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요양돌봄	건강보험료 지원	155	15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8	60

- 국가사업과 유사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한 효율화 필요 사업(1,067개사업, 8,547억원)

영역	사업 유형
보호돌봄	아동 돌봄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지원,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생활지원	식사 지원, 위생 지원,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폭력 피해-예방 지원, 출산장려 지원, 장례 지원/ 묘비 정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노숙인 지원,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교육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장학금 지원, 장애인 교육 지원
건강의료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지원, 건강증진 지원, 보장구 지원

8 사회보장사업의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영역	사업 유형
요양돌봄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주거	주거자금 대출
고용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직업능력-교육, 자활근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문화여가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생계	수당 지원, 생활비용 지원, 생활자금 대출, 긴급구호 지원
재해보상	재해 구호 및 보상

□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의 고려사항

○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체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판단하고 조정안을 모색하는 관점은 중앙정부 사업간의 그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

- 중앙정부 사업간의 조정안 마련은 부처 및 부서 기능에 따른 중복성·유사성이 사업운영의 효율성, 수요자 입장의 혼돈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정 추진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사업간의 유사성이 발견된 경우, 조정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방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 조정은 정부간 복지 책임의 범위, 복지사업을 통한 수요 충족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논의)가 불충분한 실정
- 즉, 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사업의 보충성(supplementary)에 대한 견해, 보충적 급여·서비스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판단 존재
- 중앙정부 사업으로 욕구별 적정수준 혹은 최저수준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자체의 보충적 사업 수행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다만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공감과 합의가 필요
- 지자체의 재량적 사업 추진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복지 증진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지자체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도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사업구조

와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성, 중복성이 있는 사업의 정비가 필요

-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중앙사업의 적정수준 충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보충적 성격'의 지방사업을 제한하려면, 중앙사업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 (커버리지 및 급여수준 조정을 통한 기본 욕구 충족, 보장성의 확보)
  - 예컨대, 소득보장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보다 높이고, 서비스 사업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향-원칙의 사전적 협의, 공유 필요
  -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도, 동일 목적의 급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받기 보다는 통합하여 받는 것이 나을 것임. 그렇지만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 과정이 복잡해다 해도 각각 받는 상황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욕구영역별 충족도를 진단하고, 그에 근거한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준비할 필요

- 지자체별 복지 자원의 분포, 공급 현황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미충족 욕구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적 사업추진(재량권)을 제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보다 장기적으로 지자체별로 제도별, 욕구영역별 수급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중앙-지방사업간 조정을 추진
  - 영역·사업별 욕구 규모 및 충족 수준 파악, 사업운영 주체의 적절성 검토: 기획, 재원 부담, 규제, 유관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지자체의 전반적 재정상태, 제도의 성숙도, 지역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 □ 연구 배경

-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복지분야 총 지출은 115조원이며, 지난 10년간(2005~2014)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이 7.0%,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10.3%로서(보건복지부 2014, 주요업무 참고자료), 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속도와 규모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 올해의 복지분야 지출은 정부 예산의 30.7%이며(정부 전체 총지출 375조원,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원), 예산 규모와 함께 사업의 양적 증가도 병행됨.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사업의 수는 360개('14년 기준)로 확인됨.
- 복지예산의 증가는 효율적 복지예산 관리, 운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왔고,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었음.
  - 복지분야의 유사중복 문제를 주요 정책 이슈로 주목하기 시작한 이후 2009년 총리실 주관 「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09. 6)이 발표됨. 9개 부처 수행 복지사업을 정비(249개 사업 중 90개를 정비, 159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됨.
  - 당시 지적된 다음의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점'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사안들로서, 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구조화 모색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집행 현장의 행정부담 과다로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곤란: 사업별로 사업 지침, 자금집행·보고·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각기 달리 운영
    - 수혜자의 혼란·불편 초래: 사업목적은 유사하나, 지원내용·조건, 전달체계 등이 달라 수혜자의 혼란·불편 초래
    - 수혜자간 서비스 형평성 저해: 지원내용·조건 등이 달라 동일조건인 수혜

자간 서비스 수준 격차 초래

- 동일인의 유사사업 중복수혜 가능: 전달체계 등이 달라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인 중복수혜 확인 곤란
- 유사 서비스 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 초래: 자금배분 조정 필요시 별도 절차 필요
- 수혜자 필요에 의한 탄력적인 서비스 선택 곤란: 유사한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업이 달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 초래

○ 이후 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간 연계, 조정의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옴.

- 이와 관련한 사보위의 안건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 복지사업 조정·연계 추진 현황/관리강화 방안: 제4차 사보위('13.9.10), 제5차 사보위('13.12.24), 제8차 사보위('14.7.28)
-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방안: 제7차 사보위('14.5.14).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제8차 사보위('14.7.28)
- 즉, 2013년부터 사회보장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모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4년부터 정부는 국가예산 및 조세지출 사회보장사업의 목록과 현황을 정리하여, 기존 17개 중앙행정기관 292개 사업을 220개로 재분류하고, 새로 조사된 140개를 추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 360개 사업으로 분류함(강혜규 외, 2015: 13).

- 개별 사회보장정책의 추진 뿐만 아니라 개별 정책과 전체 사회보장체계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간의 조정·연계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사회보장사업의 증가와 난립은 사회적 복잡성을 높이고, 비용효과성을 저

하시키며, 정보 비대칭성(asymmetry)과 제도에 대한 접근성 격차로 인한 급여 편중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보장체계 전체의 정당성(legitimacy)을 위협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2013.1) 이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경우는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어 유사·중복성에 대한 조정기능이 강화됨.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거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 2013년 61건, 2014년 81건, 2015년 상반기 47건(협의중인 안건 71건, '15. 7월말 기준) 협의 완료됨(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자료, 2015.8.11).
- 그러나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는 소규모 사업간 중복성 제거 위주의 미시적 조정에 국한되고 있는 바, 360개 국가 사회보장사업과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적·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사업의 통합·조정·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3)」가 수행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정부는 유사 사회보장사업간의 조정을 추진함.
    -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성·중복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을 중복 수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0개 사업군(60개 사업 포함)의 유사사업들에 대하여 ‘사업 통합(소규모 유관사업 통합 및 패키지화,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 사업관리 개선, 전달체계 개선(서비스기관 일원화, 협력 강화)’의 조정안이 검토됨.
-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복지로

(www.bokjiro.go.kr)' 시스템에 탑재된 사업 현황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복지부문 자체사업은 약 12,000개<sup>2)</sup>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사업의 개발·기획 방향과 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미진함.

○ 이에 중앙과 지방간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적, 균형적 연계 및 발전을 위해 유사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조정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대체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이 포괄하지 못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보충적 성격의 사업,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용됨.
- 그러나 사업효과성이 높지 않은 전시성·선심성 사업,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중복적 성격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예컨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결과) 15개 지자체 사례 분석에서 자체사업 679개 중 중앙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이 52개였음.
-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도 사업간의 중복 정비, 조정·연계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도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사성·중복성을 최소화한 사업 기획,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됨.

## □ 연구 목적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운영 현황 파악 및 지자체 특성별 경향성 분석

2) 이는 본 연구의 검토과정에서 정비되어 제3장 제2절에서 제시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수는 5,891개임.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시도 본청사업, 시도가 기획하고 시도와 시군구가 재원을 분담하여 시군구가 운영하는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당초 복지로서 추출한 12천여개의 데이터는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이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입력되었고, 이 자료의 정확도가 우려되어, 시도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는 "시도 기준"으로 파악됨. 따라서 12천여개의 당초 사업 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 수의 차이는 입력된 데이터의 에디팅 과정에서의 정리와 함께,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의 검토 단위의 차이가 반영된 것임(예컨대,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하는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이 당초에는 25개로 파악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로 반영됨).

-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자율성, 대응성,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감안한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 실태 점검
-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정비 방안 모색
  -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역할분담을 위한 장·단기적 사업 운영원칙 마련
  - 제한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방안 검토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회보장사업의 관리체계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
  - 중앙부처 의무이행 사업 확대와 지자체 복지재정의 부담을 감안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적절한 복지사업 분담 방안 모색에 활용
  - 중앙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고 중앙정부의 추진이 효율적인 사업 확인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 경감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
  - 지자체 복지정책 추진의 지역 특성별 경향성과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지자체의 전반적 복지수준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지자체 복지사업의 사업 분류
  -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사업 데이터를 검토하여, 대상별, 기능별 분류 및 분석을 실시함.
    - 2015년 4월 기준으로 취합되는 데이터 셋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다만 ‘복지로’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결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는 복지관련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sup>3)</sup>로서, 탑재되는 데이터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사업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알려 서비스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정보 제공에 비중을 두고 있음.

- ‘복지로’에서 취합된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에디팅을 실시함.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 분석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특성으로서, 대상(생애주기, 소득계층 등), 주요 목적 및 기능, 급여 유형, 예산 등을 분석함.

- 지역 특성별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분석함.
- 대상자 특성(장애인, 노인 등), 급여 유형(현금, 현물 지원 등)의 분포 등을 분석함.

□ 지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평가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사업 대상의 특성이 동일(유사)하고, 사업 내용(목적 및 기능)이 중복 혹은 유사한지 검토함.

- 지자체 사업의 경우 ‘보충적 서비스’가 다수 운영중임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재량권 및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함.
- 2014년 기준 360개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시 추진된 15개 시군구 샘플링 조사 결과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중인 신설·변경 협의 사업 분야를 검토하고 관련 전국 사례 규모를 파악함.
- 2013년 이후 사보위 사무국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된 지자체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해당 사업 파악

3) 온라인 신청 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별 모의계산 등의 복지정보 제공, 복지시설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함.

□ 지자체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판단의 준거 틀(안) 제시

○ 2014~2015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을 감안하여, 국가사업과 중복성·유사성이 감지된 지자체 사업의 조정 원칙을 제시함.

-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3)」에서 제시된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검토함.

- (제한) 국가사업과 유사 목적의 현금성 급여
- (제한) 시행예정 국가사업과의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
- (제한) 사회보험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허용) 국가사업과 유사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확대 서비스
- (허용) 지자체 자체 서비스는 재정 여건이 가능하면 허용
- (협의) 특정 부처의 주요사업인 경우 제도운용 효율화 건의

□ 중앙-지자체 사업 유사중복 조정에 대한 원칙 마련 및 조정안 제시

○ 도출된 유사중복 유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조정방향을 제시함.

○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조정·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언함.

##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 지방 복지사업 운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기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선진국의 복지사업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 복지사업 수행 실태, 중앙-지방의 책임 관계 사례 검토

□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 조사 및 분석

## 20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 사회보장정보원(舊,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현행화 data 검토 분석
  -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자치단체 유형, 인구 및 재정 규모에 따른 지자체 복지사업 현황 분석
  - 조사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예산서, 관련 조례 등으로 2차 검토를 실시

### □ 사업조정 원칙 및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
  -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및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 청취
- 지자체 공무원 의견수렴 실시
  - 유사중복으로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실태 확인, 사업의 실효성 및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수렴 실시



## 제2장

#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관련 논점 및 제도 현황

제1절 유사중복 관련 주요 개념 및 쟁점

제2절 복지사업 운영의 중앙-지자체 분담에 대한 논의

제3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 2

##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관련 << 논점 및 제도 현황

### 제1절 유사중복 관련 주요 개념 및 쟁점

#### 1. 유사중복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sup>4)</sup>

□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관점 및 판단기준

○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되는 중복, 유사의 개념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전적 의미
  - 중복: 같거나 비슷한 것이 되풀이되거나 겹침
  - 유사: 서로 비슷함
- 미국 연방정부가 2009년 법 제정을 기반으로 실시한 정부회계국(Government Accounting Office, GAO)의 연방정부사업 유사·중복·분절 사업의 조사에서 사용된 기준
  - 유사(overlap): 여러 기관 혹은 사업이 유사한 목표(goal)를 가지고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거나 유사한 수혜자(beneficiaries)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중복(duplication): 둘 이상의 기관이나 사업이 동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같은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분절(fragmentation): 하나 이상의 연방기관이 동일한 국가적 필요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을 의미(정부가 이러한 서비스 전달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는 경우)

4) 본 연구는 본 원에서 수행한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3)」의 후속 과제로 진행된 바, 사회보장부문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에 대한 점검이라는 동일한 맥락의 연구로서, 기본 개념에 대한 검토는 중앙 사회보장사업 점검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함. 강혜규 외(2015: 27~30)의 내용임.

- 중복 현상에 대한 정의(최영준 외, 2014: 262~263)
  - 중복 현상: 복지사업의 수행주체인 부처간, 동일한 부처의 부서간 유사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대상과 욕구가 상호 중첩되어 전체 복지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만우·김영수, 2013)
  - 서비스 중복: 서비스 수혜자격이 있는 같은 개인 또는 동일집단이 두 개의 서비스를 모두 받고 있는 경우(유승현·이혜승, 2012)
- ‘중복, 유사’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정책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실용적 개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개념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사회보장사업에서의 중복, 유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 중복사업: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 및 급여유형의 사업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각각 다른 부처, 부서, 동일 부서내)
    - 서비스 ‘중복’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가장 정확한 ‘중복’의 확인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한 구성의 서비스(서비스 내용 및 양, 급여유형 등)를 2가지 이상 이용·제공받는 경우일 것임.<sup>5)</sup>
    - 이와는 달리 공급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복의 이슈는 제도의 설계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목적, 대상요건(자격기준), 급여내용(유형, 수준), 전달체계 등과 관련됨.
  - 유사사업: 사업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유형(제공형태)가 유사한 경우
    - 제공형태(현금급여, 현물급여, 서비스, 바우처 등)만 동일한 경우는 유사 사업으로 보지 않음
- 이와 같은 정의에 기반하여,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생애주기 및 대상특성) 영역 별로 목적·기능 유형을 검토하고, “목적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상세 대상범

5) 강혜규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이력 분석을 실시함.

위의 유사성, 수단(급여·서비스 유형)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게 됨.

-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군을 확인한 후 세부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함.
- 실제로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검토의 의의

- 중복사업, 유사사업의 존재로 유발되는 동일-유사행정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예산 소요의 축소가 가능함.
- 유사한 다수의 사업이 운영되면서 급여·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혼동되거나 서비스 이용-접근이 불리-불편한 상황의 감소가 가능함.
  - 단, 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소관부처가 다른, 제공기관이 다른)가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을 감안(사업별 급여의 욕구 충족도가 낮을 경우)할 필요가 있음.
-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유사한 사업인데 소관부처 혹은 소관부서가 상이하여, 선정기준등도 상이하여, 발생하는 복잡성의 감소가 가능함.
  - 단, 예산활용 및 대상자선정 과정에서, 재량적 여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이 감안되어야 함.

〈표 2-1-1〉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평가 및 조정 기준

절차	세부 내용	
사업간 중복·유사성 평가	검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특성, 사업목적·기능, 급여·서비스 유형</li> <li>• 소관부처, 전달체계</li> </ul>
	중복·유사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사업)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급여가 각각 다른 부처 (혹은 부서)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목적 급여의 동시 수급 가능성 검토</li> </ul> </li> <li>• (유사사업) 사업 목적·기능의 유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대상군(생애주기 및 욕구특성) 영역별로 사업내용 유사성 검토</li> </ul> </li> </ul>
↓		
조정 필요성 판단	급여의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목적 사업으로서, 유사조건의 대상자간의 급여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사업들(재원, 운영부처가 다른 사업들)</li> <li>• 동일 대상군 중 일부 대상에 집중(혹은 누락) 현상을 보이는 사업들</li> </ul>
	수요자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업의 세분화로 수요자의 사업 인식이 어려운 사업들</li> <li>• 다양한 욕구에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사업들(사업조정을 통한 상승효과 기대)</li> </ul>
	운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목적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는 사업들</li> <li>• 유사 목적사업의 상황별 맞춤 대응, 서비스 패키지 운용이 적절한 사업들</li> </ul>
↓		
사업 조정방안 마련	사업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유관사업 통합 및 패키지화</li> <li>•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li> <li>• 포괄보조금 방식 운영(소규모 유사사업, 지자체 재량 확대 필요사업)</li> </ul>
	사업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명칭 변경</li> <li>• 사업 폐지</li> </ul>
	사업 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운영 단위 조정</li> <li>• 사업 정보 연계 및 운영 부처(부서)간 협력 강화</li> </ul>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전달체계 조정: 서비스기관 일원화</li> <li>• 서비스기관간 공식적 협력시스템 구축: 공통서식, 정보시스템 공유 등</li> </ul>

자료: 강혜규 외(2015: 30)

## 2.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성 분석 사례<sup>6)</sup>

□ 다음은 강혜규 외(2015)의 연구에서 360개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임,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sup>7)</sup>, ‘유사’사업의 사업 목적·기능, 대상, 급여내용 등을 분석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사 사업들은 다음과 같이 20개 사업군으로 정리되었음(강혜규 외, 2015: 286~288).

○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성 여부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려움. 세부사업 영역별 욕구 및 사업대상 특성, 사업의 성숙도에 따른 운영 여건의 차이 등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연구에서는 사업명칭과 기본 특성으로 파악되는 유사사업을 일차적으로 추정하고, 주요 사업분야별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유사사업을 판단함. 발굴된 유사사업군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제시함.
- 조정방안은 ‘사업 통합(소규모 유관사업 통합 및 패키지화,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 사업관리 개선, 전달체계 개선(서비스기관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함. 그러나,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배타적인 개선안이 아닌 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사업군별로 마련함(20개 사업군 60개 사업 포함).

〈표 2-1-2〉 유사성이 발견된 중앙 사회보장사업 20개 사업군과 조정안

사업 유형	대상 사업	조정 방안
영유아 돌봄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 (복지부)	개별 단위사업 차원의 조정 모색에 앞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료지원사업과 양육수당제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간의 관계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논의 필요
방과후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연합(joined-up services) 방안, 방과후 돌봄 운영의 다양한 모형을 마련, 이용

6) 강혜규 외(2015) 연구에서 수행된 유사사업 분석 및 조정안 마련의 결과임.

7)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급여의 중복 수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8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사업 유형	대상 사업	조정 방안
	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듈화 방안 검토
위기아동 통합지원 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복지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부)	지역사회 아동중심 보호·지원체계의 개편·확립 방안 마련이 필요 취약계층 중심의 대상자 선정을 위기관리 중심으로 전환, 지역단위 아동보호의 거점 통합기구 설치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연대협력 체계 마련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독거노인응급안전망구축사업 (복지부) 독거노인U-CARE시스템운영 (복지부)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복지부) 독거노인보호지원 (복지부)	모두 독거노인(2011년 기준 전체노인의 20%) 대상의 사업이므로 통합하여 독거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수요공급 분석, 공적 전달체계 점검, 공-사 역할분담 방안 마련 필요
기능저하 노인보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복지부)	현행 등급내 노인 보호와 등급외 노인 보호체계를 유지하되 예방급여 도입,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연속적 보호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자부)	(단기) 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을 구심점으로 '노인' 대상(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연계, 일자리 성격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 (장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전 연령층 대상 일자리사업에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 중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인지 점검하여 대안 마련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복지부) 의료급여사업 (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사업 (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 내용상 중복은 없고 필요성도 인정되나, 유사사업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해나 전달체계 관리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므로, 장애인의료비 예산항목을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예산으로 통합하여 각 제도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내용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부)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 (복지부)	두 사업은 목적, 내용, 전달체계가 거의 동일한 사업이므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를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제도에 통합하고, 제도 대상의 기술에서 '단,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300%이하'임을 표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방송통신 접근권 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자막방송수신기) (방통위)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화면해설방송수신기) (방통위)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난청노인용수신기) (방통위)	사업별 대상은 다르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전달체계가 매우 유사하므로 세 사업의 명칭을 '방송통신접근권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훈련수당의 지급요건, 기준, 액수 등은 모두 동일하며, 재원의 출처도 장애인고용기금으로 동일하므로, 두 사업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

사업 유형	대상 사업	조정 방안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복지부)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범주에 속해 있는 사업으로 실제의 조정은 불필요하나, 사업 분류 통합 수준의 조정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통합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교체 (환경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환경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기초보장 주거급여 중 자가 대상 현물급여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 단계적 통합 검토 (각 사업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
에너지지원 사업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산자부) 연탄 현물(쿠폰)보조 (산자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산자부)	사업방식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방향 고려
생활안정 지원사업	예술인 긴급복지(창작준비금)지원 (문화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복지부)	예술인제도는 타 현금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와의 통합 시 예술인 소득활동의 특수성(근로활동으로부터 소득발생까지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근로소득장려금 (복지부) 근로장려세제 (기재부) 희망키움통장 (복지부)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기초보장수급 가구까지 확대되므로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의 통합이 불가피, 보다 포괄적인 근로장려세제로 통합(희망키움통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하지만 소득지원이 아닌 자산형성지원이므로 통합은 부적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지원	희망리본사업 (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2015년부터 통합 운영 기 결정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지자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통합 검토, 각 사업의 기존 운영방식을 승계하기보다 지역노동시장의 조건(실업률, 취약계층 규모, 민간일자리 창출 능력 등)이 지역별 사업규모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장년일자리 지원사업	60세이상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부) 고령자다수 고용지원 (고용부) 장년연장지원 (고용부) 장년퇴직자 재고용 (고용부)	고용노동부 장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동일 연령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가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전달체계의 간소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윈스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산림청 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산림청의 사업 관리운영체계를 합리화하여 사업간 모집, 선발, 인력풀을 공동관리하고 활용
장애인 대상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부)	장애인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의 one-stop system을 구축하는 부처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업 유형	대상 사업	조정 방안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사업장 (고용부) 장애인 창업지원 (중기청) 저소득장애인·중증장애인 영업장소제공 (중기청)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 (중기청)	조정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운영방안 효율화 모색

자료: 강혜규 외(2015: 287~288).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발생의 근본적 원인 점검(강혜규 외, 2015: 293~295)

○ 현행 정부 부처 편제에 기반하여 사업을 기획·운영할 경우 유사사업의 실시는 피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판단됨. 기능중심의 부처와 대상자 기준의 부처가 공존하며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라 할 수 있음(예컨대, 교육·보육 지원사업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여가부 등).

- 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복지 영역이 보편적인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복지성격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 변화가 반영됨.
-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세부사업들이 상당 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제도화의 수준, 성숙도와 유관한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제도들이 실험되고 작은 규모로 신설되고 있는 성숙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분석한 사회보장사업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 내 ‘단위서비스’가 혼재되어, 실제 운영사업 보다 많이 보이는 착시를 갖게 함(사업 정보의 취합과정, 관리운영상 필요성에 기인한 부분일 수 있으나). 이는 사회보장 유관 영역의 사업 및 예산 관리상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정비가 가능한 사안임.

○ 이와 같은 상황이 불가피한 혹은 비의도적인 결과라고 해도, 이는 장·단기적인,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비 노력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기획재정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보장사업의 중복이 스크리닝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함.

-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작동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번 사회보장사업 전수 검토를 계기로, 미국 정부회계국(GAO)의 연방정부 유사중복사업 조사와 같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유사중복분절·누락·편중의 분석이 계획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거시적으로는, 변화되는 사회보장의 수요 및 공급 여건을 감안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바, 운영중인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에서 출발한 조정안의 마련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수요자의 욕구(특성과 규모)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제도의 설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영국의 경우 복잡성을 가진 제도를 신노동당정부 시기부터 일련의 개혁을 통해서 간소화함. 다양한 자산조사형 급여의 통합급여 일원화, 성인돌봄서비스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및 일선인력의 재량 확대, 개인독립급여 등 현금급여의 활성화, 아동 프로그램에서의 선택권 확대 등 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수요자와 일선 운영주체의 재량 확대의 방향으로 변화

□ 복지부문 유사중복 담론의 재고(강혜규 외, 2015: 295~296)

- 사회복지부문의 유사중복이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음. 자원의 제약을 기반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과 가치지향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왔음.
  - 복지서비스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다양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면서 과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비효율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은 정부와 언론을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라는 담론으로 표현되고 있음(최영준, 2014: 262-263).
- 중복의 제거, 유사사업 운영의 최소화는,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향상, 수요자 입장의 편의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일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실증되지 않은 담론 차원의 유사중복 논의는 막연한 불신과 복지 축소로 오

도될 수 있으므로, 근거기반의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수적임.

- 우리의 경우 중복은 곧 낭비로,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자의 선택, 욕구의 충족 수준을 고려한다면, 제거하는 방안이 최선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사중복의 점검과 함께 누락, 편중, 분절의 차원도 심도있는 추적, 분석이 요청됨.

## 제2절 복지사업 운영의 중앙-지자체 분담에 대한 논의

### 1.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

#### 가. 중앙정부의 조정 필요성: 국가복지사업 합리화 측면

□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확대 요인 증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복지부문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공공부문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적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분담 등에 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갈등 양상이 야기됨. 이러한 상황은 복지국가라는 헌법적 관점이나, 정부 조직간 경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지향점과도 배치됨.

○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분권화되고 지방자치화된 현 시점에서는 지방정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보편적임.

○ 그러나 복지책임의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구역과 행정의 대상이 중첩된다는 데에서 효과적인 역할 및 책임의 분담 필요성이 있음.

-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 대부분의 지역과 대상자(수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과도한 중복 혹은 집행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복지사무의 성격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및 책임의 중첩이 불가피한 상황은 복지의 실현에 있어 법적 갈등 혹은 경우에 따라 책임 회피, 과도한 중복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상호 역할 모형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향후 발전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
  
- 특히, 재정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기여’와 ‘급여’간의 견련성(the nature of connection) 원칙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 사회보장사무의 특수한 공공재적 특성상, 일단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임.
  - 즉, 하방경직적 지출 구조를 갖게 되는 상황에서 다층적 정부구조(중앙-지방)의 복잡성은 재정이전 관계와 더불어 각 행정주체간 사회보장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난립과 중복 등의 비효율과 과도한 재정분담에 따른 책임 회피 등 복지사업의 운영의 실패를 초래할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관리 할 수 있는 조절기제가 필요함.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복지사업 조절 기제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를 포함한 복지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관련 재정의 집행과 이관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와 대안 마련도 필요함.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접근, 그리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는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한 국가복지사업(중앙-지방)의 모니터링임.
  - 국가 복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예

측과 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의 분배와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적합한 평가와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복지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복지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나. 중앙정부의 조정 필요성: 효율화 및 형평성

□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 필요성은 효율화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지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특수성에 따른 보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함. 따라서, 이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나, 자체적인 재원 마련 등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임.
-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교부금 등 관련 예산의 지원을 통해 자체 복지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풍수해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복지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체로 보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교부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의 마련도 필요함. 즉,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복지 회복력(welfare resilience)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복지사업의 특성상 고유한 상황에 조응하는 지역별 복지모델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
  - 최근 서울시 복지기준 마련등을 필두로 지자체별 심도있는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에 기반한 지역별 복지 비전의 설정과 특화된 정책의 제시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과 지역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지역사회 스스로 가외성(redundancy)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임. 즉, 지역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열악하여 자체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따름.

- 이는 결국, 국가복지 전반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요인이 될 수 있음. 지역사회 복지 회복력(welfare resilience)에서도 태생적인 차이를 발생하게 하며,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복지의 지역별 보편성 향상, 지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

-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한 조절기제는 통합을 통한 규제나 과도한 관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나아가 공공과 민간 영역과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2.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재량권 확보

- 다른 정책 부문과 달리 사회복지부문에서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한 고유의 전달·집행 구조가 검토되는 이유는 복지제도의 본질이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를 본질로 하는 복지 제도는 그 운영과 관련한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여타의 일반 행정기관과 차별화된 논의가 이루어짐.

- 최근 사회보장지출이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 간의 갈등 격화 등 복지를 포함하여 증가한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정립에 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제공 구조는

복지를 넘어 광범위한 사회보장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의 기획, 집행구조의 재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

- 따라서, 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관계하는 중앙부처와 그 제도의 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체계 모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복지 영역의 확대와 제도 및 대상 규모의 증가는 그동안의 복지 제공 구조의 과부하를 수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다양한 개편 정책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모형 등이 마련되고 시도되었으나 변화하는 복지 여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정치한, 단계적 대안의 마련과 지속적 사회보장제도의 추진을 위해 복지의 공급과 관련한 적합한 역할분담의 정립이 필요함.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요청되는 복지행정업무를 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여건을 정치하게 구조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청됨.

### 가. 지자체 재량권 확보의 필요성: 지방 분권 및 복지 분권화 측면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복지 부문에서의 분권화는 행정·자치·재원의 분권화와는 다소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음.
- 복지 분야에서 지자체를 실천 주체(main body of practice)로 한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복지부문의 지방화·분권화<sup>8)</sup>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시행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음.
- 실제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치·재원의 분권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복지부문의 지방화·분권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8) 분권화는 중앙의 권한이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화는 탈중앙집권화(decentralization), 권력의 지역분권화라는 의미 외에 국가역할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중요성 증가를 의미함(강혜규 외, 2006).

- 과거 민간영역 중심의 비공식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중심의 대상자 보호, 빈곤계층에 대한 중앙집권적이며 잔여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복지분야에서 ‘복지의 현대화’ 경향과 함께 질적 변화를 위한 체질 변화가 추진되었음.
  - 즉, 최근 10여년 동안 다양한 차원의 복지체제 성격 변화가 추진되었음. 그것은 지자체 등을 제공주체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공식화, 지역사회 중심 보호의 전환, 사회서비스 등 전(全)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시행 등임.
- 복지 영역에서의 분권화가 정치적·행정적 분권화와 맥을 같이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위와 같은 복지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취약성 때문이기도 함.
-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가운데 분권화·지방화, 공식화된 복지사업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는 문제였음.
-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복지영역에서의 ‘복지 분권화’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지자체 중심의 복지정책’ 시행<sup>9)</sup>과 함께 본격적으로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9)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의 추진은 참여정부 기간(2002년~2007년)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2003),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행정 및 재정이양)(2005), 지역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2004~2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2005),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2007)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복지사업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체계의 분권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표 2-2-1〉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복지분야 분권화 주요정책)

시기	주요 정책 및 내용
200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자체 중심의 복지사업 수행 기반 마련
2004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06): 통합조사서비스 연계 전문화 실험
2005년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자체 사회복지직 증원(1,830명) ○ 복지사업 이양 등 지방화 본격 추진: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2006년	○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개편(2006~07) ○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 설치' 및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 ; 다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 준비
2008년	○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 관련 복지전달 개선 TF 운영 ○ 시군구 「희망복지129」 모형 개발
2009년	○ 지자체 '민생안정추진단' 설치: 민생안정요원 900명 배치(계약직) ○ 시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 분권교부세제도 연장결정(2014년 까지) ○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정비,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민간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한국복지정보개발원 설치 ○ 시군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실시
2011년	○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 결정(7,000명)
2012년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실시 ○ 범부처 복지사업정보연계 본격 추진(복지부로 이관) ○ 복지부내 '복지행정지원국' 설치
2013년	○ (개정)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지자체 복지사업」 전수조사 및 정보 관리체계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구축 및 운영: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관리

□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최근 10여 년의 활발한 제도추진 속에 복지의 분권화 즉, 지자체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와 사업들의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2년 '지자체 복지사업 전수조사'<sup>10)</sup> 결과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

10) 2012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2년도 지자체 복지사업 현황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음.

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총 수는 40,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 복지부문에서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공공 사회복지부문의 전통적 역할인 ‘중앙 정부가 설계한 제도의 충실한 집행’ 뿐만 아니라 복지지원을 위한 자원의 확대 및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제공책임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이 추가되었음.

○ 이전에는 중앙에서 설계된 정책·급여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개별적인(individualized)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를 설계, 적합한 자원을 동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 관리하는 방안, 이를 위하여 공공·민간 복지기관들이 협력하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됨(강혜규 외, 2013: 76).

○ 이러한 복지제공을 위한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표 2-2-2〉 사회복지부문의 역할변화 비교

공공 사회복지부문의 전통적 역할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 집행에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지침의 준수 기준</li> </ul> </li> <li>• 현금급여 중심 관리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치중</li> <li>- 재정관리 차원의 사후관리·확인조사 수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형화된 대응이 곤란한 복지서비스 요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구 파악,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담과 자원 발굴·연계에 집중할 재량적 업무 환경</li> <li>-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 지원과정의 책임성을 높일 ‘사례관리’ 방식의 대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재정 매칭에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지원을 위한 자원 확대, 관리에 관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책임 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위탁 수행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및 유관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li> </ul>

자료: 강혜규 (2013: 77).

## 나. 지자체 재량권 확보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특수성

-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됨.
  -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주체로서 활동함.
    -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방정부가 서비스 집행주체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정부는 재정을 분담하거나 서비스의 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부문인 민간부문(private sector)은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식부문은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비공식부문은 조직화되지 않은 사적관계에 기초한 가족, 친족, 이웃이 포함됨.
    - 비영리부문과 비공식부문은 공식화 정도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린조직, 자조조직, 서비스제공조직, 압력조직, 조정이나 연계 조직 등이 비영리 민간부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전통적인 접근은 공적영역(국가)과 사적영역(민간)의 엄격한 구별로 특징됨. 그러나 오늘날은 점차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국가는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공공행정체계를 기반으로 복지급여를 전달하며, 민간영역은 비영리 민간이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생산하여 전달하거나, 영리부문의 시장기제를 통하여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임.
  - 점차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나 영리민간 혹은 비영리민간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국가)부문과 민간 부문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것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 또한 공공(국가)부문에 있어서도 <표 2-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 복지서비스 집행자로서의 지방정부 기능에서 복지서비스의 기획, 제공, 관리 등 능동적

인 제공자로서의 역할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대한 주체의 구분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복지서비스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음.

- 공급 주체를 공공(국가)부문으로 한정한다고 할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에서의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통적으로 복지사업이 지닌 속성은 포괄성, 책임성, 전문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포괄성은 대상과 급여(서비스)의 수준이 얼마만큼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이며, 책임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됨.
    - 아울러 전문성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급여(서비스)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와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안임.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본질적 속성은 보충성(보완성), 다양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즉, 지자체 자체 사업이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보완적인 기능임을 강조할 때, 보충성은 1차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안임.
    - 지자체 특성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자체사업의 특성 중 하나인 다양성은 지역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안임.
-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단순히 복지사업의 속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속성들을 지니게 됨.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적인 복지의 책임이 국가(중앙정부 + 지방정부)라고 할 때, 복지사업의 속성에 충실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지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부속적인 기능으로서만이 아

나라,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위한 고유 영역을 확보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복지사업의 요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복지사업의 집행, 혹은 전달자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역과 내용을 가진 고유한 복지사업에 있음.
-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집행과 고유한 자체 복지사업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복지사업의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진정한 복지의 실천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3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 1. 협의조정의 의의와 개요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제 11238호)의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에 신설된 제도임.

○ 협의·조정은 협의와 조정이라는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sup>11)</sup>과 ‘평생사회안전망’<sup>12)</sup>에 해당하는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협의·조정의 대상<sup>13)</sup>임.

- 신설·변경제도의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

1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12)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13) 협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다. 제도 신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제도 변경의 의미는 다소 유동적이다. 제도 변경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변화 없이 대상자 규모의 변동,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따른 급여수준 및 예산 규모의 변동 등은 제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의미함.

- 두 번째 단계인 조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동등한 권한을 같은 둘 이상의 주체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임.
- 따라서 신설·변경 제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안건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간의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됨. 반면에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며, 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담당함. 협의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실시함.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는 해당 기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

□ 협의·조정제도의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의함.

- 시행령 14조는 협의·조정 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조정 세부운용 방안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협의요청서에 포함할 내용은 신설·변경하는 제도의 사업계획, 신설·변경의 근거, 예상되는 성과, 예산 규모 등이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증가와 규모 확대로 인하여 사회보장체계의 복잡성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함.

-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주체가 1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9개 시·

군·구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제도의 복잡성은 물론 제도 간 유사·중복의 조정, 사회보장제도간 관계 설정 및 정책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협의·조정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sup>14)</sup>

- 첫째, 신설되는 제도 또는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누락,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함.
  - 급여의 중복, 누락, 편중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3대 영역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을 균형 있게 연계해야 함. 또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와 급여를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분석이 필요함.
-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과 기획을 발전시키고자 함. 사회보장정책의 담당자로 하여금 제도의 목표, 내용, 정책수단을 폭 넓게 검토·분석하도록 함.
  -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예산(투입)과 사업의 기대효과(산출), 전달체계, 사업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음.
- 셋째,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러한 접근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확대를 전반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와는 다름.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는 제도의 신설과 확대는 장려하는 것이며, 반면에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선심성 제도, 유사·중복 급여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도 신설과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사회보장제도의 급

1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조정 of 취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이는 협의·조정 제도의 목적이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제도 시행 주체는 협의·조정 이전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격한 재정 지출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동일한 재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비용 절약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의도인 것임.

## 2. 현행 협의조정 기준

- 신설·변경제도의 협의·조정 기준이란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분석·검토하는 평가기준을 의미함.
  -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이 되는 해당제도의 속성과 내용, 제도 시행의 결과인 산출의 속성을 측정된 결과를 포함함. 평가적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내용, 특성, 가치 등을 표현하거나 측정할 수 있도록 수준, 정도, 범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평가기준이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준거와 연계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됨. 따라서 협의·조정 기준이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하나는 협의·조정 안건인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분석·검토하는 평가항목의 속성과 내용을 의미함.
    - 둘째는 평가항목의 속성과 내용, 산출된 결과에 따라 협의·조정 안건의 처리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함. 전자는 협의·조정 의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협의·조정의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음.
  - 평가기준은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신설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검토 영역과 내용을 근거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평가기준임.
    -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신설·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함.

- 판단은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하는 것이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평가기준과 판단기준은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 토대로 산출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판단기준임.

□ 협의·조정 평가기준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과 '협의 및 조정'의 내용에 근거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은 ①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②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③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④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 제고,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함.

○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검토,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에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협의·조정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의 중복·누락 방지'이며, 협의·조정의 기준은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신설·변경 제도의 운영방안 등임.

□ 2015년 협의·조정 평가기준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출하였으며(표 2-3-1 참고), 평가 기준은 2014년에 활용하였던 협의·조정 기준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되, 보다 간명하게 정리됨.

○ 협의·조정의 평가 기준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요소로 설정하며, 평가항목은

신설·변경의 타당성, 사업(대안) 내용의 적절성, 재정, 사업의 기대효과 등의 4개로 구분되었음. 평가요소는 모두 11개로서, 각 평가항목별 2~3개로 구성됨.

〈표 2-3-1〉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1. 신설·변경의 타당성	1-1. 사회문제 정의 1-2. 신설·변경의 필요성 1-3. 유사·중복 등 관련제도 분석
2. 대안의 적정성	2-1. 대상자 2-2. 급여 2-3. 전달체계
3. 재정	3-1. 투입 재정 3-2. 재정분담 및 재원조달 3-3.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대한 영향
4. 기대 효과	4-1. 사업의 효과 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참고사항 (해당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 사전협의(국가재정법 제87조) 결과</li> <li>• 조세감면 관련 사전협의(국가재정법 제88조) 결과</li> <li>•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결과</li> <li>•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결과</li> <li>•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경비, 국고보조, 지방세 감면 사전협의(지방재정법 제25~28조) 결과</li> <l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 전 협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결과</li> </ul>

□ “신설·변경의 타당성”은 사회문제 정의, 신설·변경의 필요성, 그리고 유사·중복 등 관련제도의 분석 등 3개의 평가요소로 구성함.

○ 사회보장제도란 국민들이 생애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의 타당성은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됨.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 검토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통해서 대응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문제의 심각성,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근거를 분석하는 것임.
  - 제한된 자원 하에서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과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 또한 이미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임. 추가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사회보장 영역의 증장기 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함.
- 유사중복제도 등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은 제도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함. 이를 위해서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외 사례의 현황 파악 및 분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신설·변경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함.
- “대안의 적정성”은 협의·조정 사업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의 (수급)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등의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임.
-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신설 제도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그리고 제도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대상자 변화를 분석하는 것임.
  -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연령, 장애 정도, 가구 특성 등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로 활용함. 예를 들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개인소득을 고려할 것인가 또는 가구소득을 고려할 것인가, 소득만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고려할 것인가 등을 선택하게 됨. 또한 대상자에 포함하는 소득 수준을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등의 선택도 필요하게 됨.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취지, 제공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전달 체계 등과 연관성을 갖게 됨.

- 급여에 대한 평가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급여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급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임.
  - 현금, 현물, 인적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의 급여 형태, 급여 수준,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시한 급여와 서비스를 통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경 또는 추가적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함.
  - 전달체계 분석은 사업의 집행과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함. 구체적으로 급여·서비스의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방법과 조사 기관,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급여신청 단계에서 급여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
  - 업무 절차별로 수행기관이 분리된 경우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함. 또한 급여 탈락자의 이의 신청과 권리구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제도 신설·변경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의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및 대응 방

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야 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분석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필요한 투입재정(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의 타당성, 급여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함.
- 재정 분석을 위해서는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함. 즉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함. 또한 신설·변경 사업의 시행 시점에서 최소 5년간의 투입재정을 예측하며,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5년간의 총 예산과 연도별 예산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함.
- 신설·변경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재정분담의 타당성 검토도 중요함. 최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정 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재원분담 방식은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것이며,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함.
- 제도의 신설·변경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세 번째 평가요소임. 사회보장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예산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추가재원 확보 이외에도 신설·변경 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협의·조정 평가 기준의 네 번째 평가 항목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기대 효과”로, 평가요소인 사업의 효과,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사업 효과는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기대되는 문제의 감소나 개선 사항을 의미함. 이는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통계)지표의 변화 값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가 필요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목표가 사회적인 가치를 갖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따라서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집행 성과를 측정을 위하여 성과 목표의 달성치(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분석되어야 할 것임.

### 3. 협의조정 기준의 적용

#### 가. 기준 적용의 우선순위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의 평가 기준은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평가항목 중에서 신설·변경의 타당성은 '왜(why)'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검토·분석하는 것임.
  - 대안의 적정성과 재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how)'라는 질문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방법과 관련된 평가 기준임.
  -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제도의 신설·변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검토·분석임. 특정한 행위의 목적과 기대하는 결과는 내용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협의·조정 기준에서 신설·변경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는 표현 방식이 상이하지만 내용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정책은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으로 구성됨.
  - 정책수단은 정책목적에 의해서 선택되고, 정책목적은 정책수단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은 상호 규정성을 갖게 됨.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것은 아님.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적은 수단에 비해 앞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선행성을 갖게 됨.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거나 기

존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정책의 목적을 먼저 고려하고, 이후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상하게 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있어서 정책목적이 정책수단에 비해 시간적으로 먼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협의·조정을 위한 안건 검토는 정책목적, 정책수단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도의 신설과 변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재정, 급여, 대상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한 경우에도 정책목적에 해당하는 신설·변경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면 제도의 신설·변경은 무의미하게 됨.

- 따라서 협의·조정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우선 적용하여 판단하고, 이후에 정책수단에 관련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나. 신설·변경의 타당성과 사업의 기대 효과

□ 협의·조정 안건의 평가 기준에서 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신설·변경의 타당성과 사업의 기대 효과임.

- 신설·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제도의 신설·변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임.

-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는 제도 신설·변경의 목적과 목표의 구체성, 그리고 측정가능한 지표의 설정 여부에 대한 판단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은 첫째,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 둘째, 기존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문제 대응이 어렵다는 점, 셋째,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① 해당 사회문제의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쟁점 여부, ② 해당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 ③ 해당 사회문제로 인하여 초래된 어려움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함.
  - 판단은 추론이 아니라 협의요청서 내용에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협의요청서에서 해당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 또는 경위, 문제 발생의 원인, 문제의 크기·강도·대상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기존 제도로는 쟁점으로 부각된 사회문제의 완화 또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나 기존 제도를 변경할 필요성과 동일한 의미임.
- 따라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집단(target group)과 기능이 중첩되는 영역의 사회보장제도 분석이 필요함. 협의·조정 안건의 내용에 따라 기존 제도 분석이 필요한 영역은 [그림 2-3-1]에 제시함.
    -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의료보장제도(① 영역)를 분석해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노인, 빈곤층, 장애인, 가족, 여성 등에 대한 주거지원제도 즉 ② 영역에 해당하는 기존 제도를 분석 검토해야 함. 동일한 맥락에서 둘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중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각각 ③ 영역, ④ 영역에 해당하는 기존 제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임.

[그림 2-3-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검토 영역 예시

대상집단 \ 영역	소득	질병/의료	사고/재해	고용/실업	주거	교육	문화
영유아	③						
아동							
청소년							
취업자				④			
노인	④	①		④	②		
빈곤층							
장애인							
가족	③						
여성							

- ① 영역 : 저소득 노인의 의료 지원 제도
- ② 영역 :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제도
- ③ 영역 : 둘째아 이상 출산비용 지원 제도
- ④ 영역 : 중고령자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신설·변경의 타당성에서 기존 제도로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영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여부, 그리고 분석 결과 사회보장 급여의 유사·중복 문제가 있는가가 해당됨.

○ 동일한 수급자에게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의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동일한 수급자란 개인이 아닌 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가구 단위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출산비용 지원에 있어서 산모, 배우자, 출생아는 동일한 급여대상자(수급자)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급여라 할 수 있음.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가 기존 제도와 급여의 유사·중복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급여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대상자가 수급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이

를 권고하기도 함.

- 신설·변경 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판단은 사업 효과의 구체성과 성과지표의 계량화 여부에 근거함.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한 사업 효과는 사회문제의 완화 또는 감소로 발생함. 사업 효과의 구체성은 사업의 효과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구분하였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를 열거하고, 이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성과지표의 계량화 여부는 먼저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정된 목표치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판단함.

#### 다. 급여 수준과 대상자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제도의 급여는 일정정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 급여 수준의 형평성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이 유사한 또는 동일한 제도의 급여 수준과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짐.
  - 예를 들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급여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함. 그러나 급여 수준의 형평성은 급여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사회보장급여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시행기관별로 급여 수준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불가피하지만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임.
  - 동일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역간 급여 격차와 급여의 형평성이라는 모순적 원칙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은 이러한 원칙간의 타협을 추구해야 함.

- 급여의 형평성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즉 급여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의 핵심은 개별 사회보장제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개별 제도의 수급대상자가 적절하게 설정되고,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며, 선정 기준 적용의 배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 수급대상자 설정의 적절성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일치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
- 수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선정 기준 적용의 배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수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수치로 표현되어야 하며,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기준선이 최저생계비에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있음.

## 라. 전달체계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sup>15)</sup>에 있어서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는 국민의 접근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sup>15)</sup>라는 3가지 측면에서 판단함.
- 접근성은 수급대상자들의 신청기관 또는 민원창구 이용이 편리하게 가능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검토하는 것임.
  - 신청기관이 읍면동 단위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급여 제공의 적시성 역시 접근성과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15)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공기관이 최소 시군구 단위에 분포하고 있어야 함.

-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직과 적정수준의 인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설정은 쉽지 않음. 다만, 담당인력의 규모가 수급대상자 및 예산의 규모, 사업량 등과 비례적으로 설정되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급여의 통합적 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였는가를 판단함.

## 마. 재정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재정에 대한 영향은 비용분담의 적정성과 해당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단함.
- 비용분담의 적정성, 즉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분담 구조가 그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용분담의 일반적 원칙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는 것임.
    - 사회보험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이러한 비용분담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변경 제도의 비용분담 방식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간에 비용분담에 대한 협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쟁점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임. 사회서비스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도 간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없거나 또는 크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성과 관련하여 해당 제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가를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주체는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제도 신설 및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협의·조정에서 재정적 지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첫째, 제도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특히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 둘째 신설 또는 변경 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제공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
  - 신설·변경 사업 검토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국가복지사업의 지방비 분담을 제외하고 자체 복지예산의 10%를 상회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예산을 20% 이상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음.

## 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책임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원칙을 협의·조정 평가 기준과 연계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에 따라 신설·변경의 주체가 구분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회보험의 급여를 추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임.
-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고, 해당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나, 국가적 최

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급여,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현물급여(인적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함. 이 경우에도 제도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함.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급여의 종류와 급여액이 제한됨.

-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위험의 종류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필요한 사업임. 따라서 지자체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보충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되, 보충적 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구분해서 검토함.

- 신설·변경 사업과 관련, 국가의 책임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함. 제한적이라는 것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한정한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가 정한 대상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음.





## 제3장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제1절 분석 범위 및 방법

제2절 지자체 복지사업 분석 결과

제3절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결과



# 3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

### 제1절 분석 범위 및 절차

#### 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 □ 분석 대상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분석함.

- 지자체 자체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기획·운영중인 사업으로서, 시·도 예산 100%사업, 시·군·구 예산 100%사업, 광역-기초 예산매칭사업을 모두 포함함(민간기부금에 의한 사업은 제외).
- 지자체가 실시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보장 영역(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서 '복지'를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기관에 지원이 이루어는 사업을 포함함.

##### □ 분석 자료

○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사업의 정부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실시함.

- 2015년 4월 기준으로 취합된 지자체 자체 사업 데이터 셋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공받아 활용함.

○ 입수된 지자체 자체사업 데이터는 11,572개 사업이었음(시·도 본청사업 516개, 시·도 기획사업 6,527개, 시·군·구 사업 4,529개).

- 시·도 사업: 광역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도가 기획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예산을

분담,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 시·군·구 사업: 기초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직접 기획, 시행하는 사업

〈표 3-1-1〉 지자체 자체복지사업 데이터의 검토 항목

대분류	중분류
사업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li> <li>• 시도명, 시군구명</li> <li>• 부서명, 담당자명(연락처 및 이메일주소)</li> <li>• 사업유형</li> <li>• 최초시행년도,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li> <li>• 사업시행근거유형</li> <li>• 문의처, 대표문의처, 사이트</li> <li>• 사업목적, 사업목적 유형</li> <li>• 사업시행근거명</li> <li>• 사업시행근거조항내용</li> <li>• 지침서식명</li> </ul>
급여서비스 제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대상</li> <li>• 서비스 내용</li> <li>• 지원 수준</li> <li>• 이용 및 신청방법</li> <li>• 전년도 지원실적내용</li> <li>• 당해연도 지원계획</li> </ul>
사업예산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예산액</li> <li>• 총예산액</li> <li>• 국고보조금액, 기금보조금액,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예산금액</li> <li>• 전년도 집행금액</li> </ul>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존재여부</li> <li>• 선정기준 유형</li> <li>• 선정기준 세부내용</li> </ul>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li> <li>• 조사기관</li> <li>• 결정기관</li> <li>• 급여서비스기관</li> </ul>
맞춤검색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li> <li>• 가구유형</li> <li>• 욕구유형</li> <li>• 대상특성</li> <li>• 소득구분</li> <li>• 서비스분류</li> <li>• 장애유형</li> <li>• 지원유형</li> <li>• 장애등급</li> </ul>

## 2. 분석의 절차 및 내용

- 시도 분청사업(사도 입력), 시도사업 및 시군구사업(시군구 입력)의 구분
- 시도사업의 사업명 확인·정리
- 사업별 내용 확인: 분석 위한 코딩 및 오류 확인
- 사업 유형 구분
- 중앙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유사중복사업 조정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 데이터의 식별 및 정리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수된 지자체 자체사업 데이터는 11,572개 사업(시·

도 본청사업 516개, 시·도 기획사업 6,527개, 시·군·구 사업 4,529개)이었으나, 자료의 에디팅 결과, 총 사업 수 5,892개(시도사업 521, 시도-시군구매칭사업 1,077개, 시군구사업 4,294개)로 정비함.

- 지자체의 입력 오류(국고지원 사업 입력, 이중 입력 등)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제출예산서, “복지로” 대조 등을 통해 검증함.
- 시도-시군구매칭사업의 경우, 시군구별 입력이 다수 누락되어, 시도를 통해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함.
  - 연구기한의 제한으로, 기타 시도사업 및 시군구사업과 동일한 변수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사업명, 예산, 사업시행 시군구 수를 중심으로 시도의 자체 확인, 기입 제출을 요청함.
  - 당초 복지로에서 추출한 12천여개의 데이터는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 이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입력되었고, 이러한 재조사의 과정을 거쳐 이후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는 “시도 기준”으로 파악됨. 따라서 12천여개의 당초 사업 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 수의 차이는 입력된 데이터의 에디팅 과정에서의 정리와 함께,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의 검토 단위의 차이가 반영된 것임.

#### □ 사업 유형 분류

○ 지자체 사업 분석을 위해 10개 영역 82개 사업유형으로 분류함.

- 중앙 사회보장사업 유형 분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10개 영역을 분류함. 분류는 사업의 “목적 및 기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위(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sup>16)</sup>를 기초로 하되, 포괄적 기능의 복지 영역은 주요 세부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강혜규 외, 2015: 28).
- 사업의 주요 “목적 및 기능” 유형을 다음과 같이 10개 영역으로 분류함(중앙 사회보장사업의 분류 기준과 동일함).

16) ‘환경’ 부문은 해당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분류에서 제외 함.

보호·돌봄	요양돌봄	교육	건강·의료	생활지원
고용	주거	문화·여가	생계	재해 보상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위(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를 기초로 하되, 포괄적 기능의 복지 영역은 주요 세부 기능별로 구분
- 사회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서, (아동 대상의) ‘보호·돌봄’, (성인 대상의) ‘요양·돌봄’
- 복지부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생활지원’
- 소득보장 성격의 ‘생계(지원)’
- 각종 재난등 특수요구에 대응하는 ‘재해보상’
- ‘환경’ 부문은 해당사업이 없어 제외
- (10개 영역) ① 보호·돌봄, ② 생활지원, ③ 교육, ④ 건강·의료, ⑤ 요양·돌봄, ⑥ 주거, ⑦ 고용, ⑧ 문화·여가, ⑨ 생계, ⑩ 재해보상
- (82개 사업유형) 10개 유형별로 사업의 대상, 급여유형, 기능을 반영하여 구분하되, 중앙사업과의 비교 용이성을 감안하여 세부 분류함.
  - 보호·돌봄 9개 유형
  - 생활지원 33개 유형
  - 교육 7개 유형
  - 건강·의료 6개 유형
  - 요양·돌봄 3개 유형
  - 주거 4개 유형
  - 고용 7개 유형
  - 문화·여가 5개 유형
  - 생계 5개 유형
  - 재해보상 3개 유형

〈표 3-1-2〉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유형 분류(10대 영역 82개 유형)

영역	사업 유형		영역	사업 유형		
보호 돌봄	1	아동 돌봄 지원	교육	43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2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44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3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45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4	보육료 지원		46	장학금 지원	
	5	보육교사 지원		47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6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48	장애인 교육 지원	
	7	지역아동센터 지원		49	평생교육	
	8	아동 급식		건강 의료	50	건강검진 지원
	9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51	건강보험료 지원
10	식사 지원	52	의료비 지원			
생활 지원	11	위생 지원	요양 돌봄	53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지원	
	12	생활용품 지원		54	건강증진 지원	
	13	이동 지원		55	보장구 지원	
	14	언론매체 접근 지원	주거	56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15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6	폭력 피해-예방 지원		58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7.1	장수수당, 효도수당, 장수 축하	고용	59	주거비 지원	
	17.3	장수 축하		60	주거자금 대출	
	17.5	효도수당		61	주택시설 개선	
	18	명절생일축하위문	문화 여가	62	에너지(난방) 지원	
	19	결혼장려 지원		63	일자리 지원	
	20	출산장려 지원		64	창업 지원	
	21	장례 지원/ 묘비 정리		65	직업능력-교육	
	22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		66	자활근로 지원	
	23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67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24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68	장애인 일자리	
	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69	노인 일자리	
	26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생계	70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27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71	여가/문화활동 지원(성인)	
	28	여성 사회참여 권익증진 지원		72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	
	29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73	여가/문화활동 지원(장애인)	
	30	노숙인 지원		74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31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75	수당 지원	
	32	복지관 운영		76	생활비용 지원	
	33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77	생활자금 대출	
	34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재해 보상	78	긴급구조 지원	
	35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79	시설폐소 자립 지원	
	36	민간단체 지원		80	재해 구호 및 보상	
	37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81	보훈 수당	
	38	행사 지원		82	보훈단체 지원	
	39	인식개선 및 권리증진 지원				
	40	자원봉사 지원				
	41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 지원				
	42	지역협력 및 민간참여 지원				

- 또한 수요자중심으로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구분함.
  -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 특수육구: 장애, 여성, 임산부, 실업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 소득수준: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일반
- 급여의 유형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함.
  - 현금 급여, 현물 급여, 프로그램, 대여·감면, 바우처, 시설 입소 등

□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본 연구의 주요 과업인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의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유사한 경우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는지, ‘급여유형(제공형태)’이 유사한지를 검토함.
  - 사업의 ‘목적·기능’의 유사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으로서, 이는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목적·기능 분류를 일치시켜 진행함.
  - 유사사업군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검토함. 10개 영역 82개 사업 유형 중 중앙 사회보장사업(360개)과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군을 선별함.
    - 개별사업별로 중앙사업과의 사업 목적, 대상, 급여 내용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상 조정(연령범위 조정 및 소득기준 조정), 급여 조정(현금 추가지급 및 서비스 추가지급)” 등의 유사 사유 분류
    - 유사사업의 속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조정 필요성을 검토

## 제2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결과

### 1.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기본 현황

####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현황

- 다음은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도 본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시도가 기획하고 시군구에서 함께 예산을 분담하여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시도매칭 사업, 시군구가 기획,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시군구사업을 검토함.
- (수집된 자료로 파악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총 5,891개이며, 시도사업 521개,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1,076개, 시군구사업 4,294개였음.
  -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64,826억원으로서, 시도사업 3,668억원,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53,086억원<sup>17)</sup>, 시군구사업 8,072억원임.
  - 사업 수에서는 시군구 자체사업이 2/3 이상을 차지하지만, 예산기준의 비중은 시도가 기획하고 다수의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의 비중이 컸음.
-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실태 분석(2015.3)의 사업 유형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업 수 기준으로는 생활지원 유형의 사업이 2,86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다음으로는 문화여가 582개, 보호돌봄 544개, 건강의료 370개, 고용 352개, 재해보상 345개, 생계 344개, 교육 241개, 주거 163개, 요양돌봄 89개의 순이었음.
  -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아도 생활지원 유형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보호돌봄, 문화여가, 고용, 생계, 재해보상, 요양돌봄, 건강의료, 교육, 주거의 순이었음. 건강의료 유형의 경우는 사업 수는 많지만 예산액은 적은 편이었으며, 요양돌봄 유형은 사업 수는 가장 적었으나 예산액은 적은 편이 아니었음.

<sup>17)</sup>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은 '총계'(순계)가 아닌 기준으로서, 시군구 부담분이 이중 계상된 수치임.

〈표 3-2-1〉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사업 수 (개)				예산 (억원)			
	총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총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전체	5,891	521	1,076	4,294	64,826	3,668	53,086	8,072
보호돌봄	544	62	162	320	14,181	958	12,456	767
생활지원	2,861	261	520	2,080	31,446	1,521	26,700	3,225
교육	241	9	56	176	741	16	587	138
건강의료	370	25	59	286	788	65	569	154
요양돌봄	89	11	33	45	1,103	81	863	159
주거	163	2	25	136	602	9	411	182
고용	352	55	68	229	4,674	446	3,567	661
문화여가	582	47	83	452	7,346	209	6,194	943
생계	344	27	61	256	2,086	239	1,292	555
재해보상	345	22	9	314	1,859	124	447	1,288

- 〈표 3-2-2〉는 자체 복지사업의 1건당 평균 예산액을 산출한 결과로서, 시도사업은 7.0억원, 시도-시군구매칭사업은 49.3억원, 시군구사업은 1.9억원이었음(시도-시군구매칭사업은 시군구 부담분이 이중 계상된 수치임).
- 시군구사업 중에서는 건당 예산액이 가장 큰 사업은 재해보상사업이었으며(4.1억원), 다음으로는 요양돌봄(3.5억원), 고용(2.9억원), 보호돌봄(2.4억원), 생계(2.2억원), 문화여가(2.1억원)의 순이었음.
- 시도사업은 중 건당 예산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호돌봄(15.5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생계(8.9억원), 고용(8.1억원), 요양돌봄(7.4억원), 생활지원(5.8억원), 재해보상(5.6억원)의 순이었음.
-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중 건당 예산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호돌봄 유형(76.9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여가(74.6억원), 고용(52.5억원), 생활지원(51.3억원), 재해보상(49.8억원)의 순이었음.

〈표 3-2-2〉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복지사업의 1건당 평균예산액

	1건당 평균 예산액 (억원)			
	총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전체	11.0	7.0	49.3	1.9
보호돌봄	26.1	15.5	76.9	2.4
생활지원	11.0	5.8	51.3	1.6
교육	3.1	1.8	10.5	0.8
건강의료	2.1	2.6	9.6	0.5
요양돌봄	12.4	7.4	26.2	3.5
주거	3.7	4.5	16.4	1.3
고용	13.3	8.1	52.5	2.9
문화여가	12.6	4.4	74.6	2.1
생계	6.1	8.9	21.2	2.2
재해보상	5.4	5.6	49.8	4.1

## □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비교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수행 경향성은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임. 다음 〈표 3-2-3〉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360개, 2014년 기준)과 지자체 자체복지사업 유형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임.

- 중앙사업이 주거-생계-교육(예산 기준), 건강의료-고용-생활지원(사업 수 기준)의 비중이 큰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은 생활지원-보호돌봄-문화여가(예산 기준), 생활지원-문화여가-보호돌봄(사업 수 기준)에 집중하고 있었음.
- 따라서 개략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사업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요양돌봄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노인장기요양의 보험제도 운영으로 인한 영향으로 예상됨.

〈표 3-2-3〉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360개, '14년 기준) 및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15년 기준) 비교

	중앙정부 사업(360개)				지자체 자체사업			
	사업 수 (개)	(%)	예산 (억원)	(%)	사업 수 (개)	(%)	예산 (억원)	(%)
보호·돌봄	39	(10.8)	57,250	(10.7)	544	<b>(9.2)</b>	14,181	<b>(21.9)</b>
생활지원	47	<b>(13.1)</b>	3,960	(0.7)	2,861	<b>(48.6)</b>	31,446	<b>(48.5)</b>
교육	43	(11.9)	90,490	<b>(16.9)</b>	241	(4.1)	741	(1.1)
건강·의료	67	<b>(18.6)</b>	69,290	(13.0)	370	(6.3)	788	(1.2)
요양·돌봄	16	(4.4)	10,940	(2.0)	89	(1.5)	1,103	(1.7)
주거	34	(9.4)	151,190	<b>(28.3)</b>	163	(2.8)	602	(0.9)
고용	52	<b>(14.4)</b>	15,290	(2.9)	352	(6.0)	4,674	(7.2)
문화·여가	6	(1.7)	830	(0.2)	582	<b>(9.9)</b>	7,346	<b>(11.3)</b>
생계	29	(8.1)	96,370	<b>(18.0)</b>	344	(5.8)	2,086	(3.2)
재해 보상	27	(7.5)	39,080	(7.3)	345	(5.9)	1,859	(2.9)
계	360	(100.0)	534,690	(100.0)	5,891	(100.0)	64,826	(100.0)

주: 1) 괄호안은 각각 전체 사업 수, 총 예산액에서 각 영역별 수치가 차지하는 비율  
 2) 중앙정부 사업예산은 '14년 기준 국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교부금등)를 포함, 건강보험사업 및 국세감면 등 15개 사업은 미포함  
 3)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계" 기준임(시도-시군구 매칭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중복계상)  
 자료: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강혜규 외(2015: 36).

□ 세부 사업유형(82개 유형)별 현황

○ 다음 〈표 3-2-4〉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82개 사업유형에 따라, 지자체 자체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임. 예산액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큰 사업을 파악해 보면, 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액이 가장 컸으며(7,359억원, 188개), 다음으로는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6,603억원, 154개),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6,302억원, 215개), 아동 급식(5,038억원, 49개)의 순이었음. 다음은 1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파악된 사업임.

- 보호·돌봄 영역: 아동 급식(5,038억원, 49개),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4,540억원, 146개), 보육교사 지원(2,257억원, 67개)

- 생활지원 영역: 복지관 운영(7,359억원, 188개),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6,603억원, 154개), 식사 지원(3,798억원, 133개),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3,445억원, 36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2,824억원, 138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1,320억원, 162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1,050억원, 80개)
  - 고용 영역: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2,110억원, 48개), 노인 일자리(1,298억원, 100개)
  - 문화여가 영역: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6,302억원, 215개)
  - 재해보상 영역: 보훈 수당(1,371억원, 253개)
- 위의 사업들은 대체로 시도-시군구매칭사업의 규모가 커서 반영된 사업이므로, 시군구사업 중 예산액이 큰 사업을 파악해 보았음. 시군구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보훈 수당이었음(1,256억원, 240개). 다음은 영역별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 규모를 보인 사업임. 전체사업 중 1천억원 이상의 사업 유형과 비교할 때, 출산장려 지원(471억원, 136개), 장수수당(312억원, 68개),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486억원, 147개), 생활자금 대출(429억원, 87개) 등의 사업이 시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이었음.
- 보호돌봄 영역: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366억원, 95개)
  - 생활지원 영역: 복지관 운영(936억원, 140개), 출산장려 지원(471억원, 136개), 장수수당(312억원, 68개)
  - 고용 영역: 일자리 지원(364억원, 78개)
  - 문화여가 영역: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486억원, 147개)
  - 생계 영역: 생활자금 대출(429억원, 87개)
  - 재해보상 영역: 보훈 수당(1,256억원, 240개)

74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표 3-2-4〉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82개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억원)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합계	5,891	64,826	521	3,668	1,076	53,086	4,294	8,072	
보호돌봄	아동 돌봄 지원	46	195	7	10	10	108	29	77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18	10	4	4	1	1	13	5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62	282	16	246	12	18	34	17
	보육료 지원	27	975	1	33	18	931	8	11
	보육교사 지원	67	2,257	8	235	20	1,919	39	103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146	4,540	12	86	39	4,088	95	366
	지역아동센터 지원	37	159	1	13	16	106	20	39
	아동 급식	49	5,038	2	308	21	4,616	26	113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92	727	11	23	25	669	56	35
소계	544	14,181	62	958	162	12,456	320	767	
생활지원	식사 지원	133	3,798	2	6	28	3,657	103	136
	위생 지원	89	153	0	0	8	58	81	96
	생활용품 지원	37	21	0	0	0	0	37	21
	이동 지원	94	173	10	36	8	42	76	96
	언론매체 접근 지원	27	45	0	0	8	43	19	3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96	308	13	52	14	181	69	74
	폭력 피해-예방 지원	78	211	17	128	20	72	41	11
	장수수당	70	384	1	21	1	50	68	312
	장수수당, 효도수당	4	10	0	0	0	0	4	10
	장수 축하	13	12	1	0.44	2	4	10	7
	장수 축하, 효도수당	2	4	0	0	0	0	2	4
	효도수당	36	24	1	3	0	0	35	21
	명절생일축하위문	152	145	11	26	4	28	137	91
	결혼장려 지원	20	5	1	0.1	0	0	19	5
	출산장려 지원	152	961	8	18	8	472	136	471
	장례 지원/ 묘비 정리	100	99	0	0	1	0.4	99	99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	36	3,445	2	223	18	3,175	16	46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45	280	2	18	10	246	33	16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162	1,320	28	125	50	1,127	84	6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138	2,824	38	141	46	2,599	54	84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18	28	2	4	4	22	12	2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42	199	7	25	11	145	24	29	
여성 사회참여 권익증진 지원	13	9	3	2	0	0	10	7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209	354	11	28	36	259	162	67	
노숙인 지원	178	132	4	4	15	98	159	30	
주민 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	9	18	2	3	2	8	5	6	
복지관 운영	188	7,359	18	266	30	6,158	140	936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154	6,603	5	216	99	6,278	50	108	
시설 건립 및 개보수	72	420	2	10	12	273	58	137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80	1,050	16	30	50	962	14	59	
민간단체 지원	90	137	10	63	5	27	75	47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81	241	5	4	13	203	63	34	
행사 지원	145	141	31	46	6	64	108	31	
인식개선 및 권리증진 지원	21	18	4	3	2	7	15	9	
자원봉사 지원	48	103	2	15	5	66	41	22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12	392	1	3	3	370	8	18	
지역협력 및 민간참여 지원	17	21	3	2	1	7	13	12	
소계	2,861	31,446	261	1,521	520	26,700	2,080	3,225	
교육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23	109	1	2	14	101	8	7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44	144	0	0	9	113	35	31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33	172	2	11	14	146	17	15
	장학금 지원	13	26	0	0	1	11	12	15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56	238	1	0.12	10	197	45	40
	장애인 교육 지원	63	39	5	3	8	19	50	17
	평생교육	9	14	0	0	0	0	9	14
	소계	241	741	9	16	56	587	176	138
건강의료	건강검진 지원	38	17	1	0.6	14	12	23	4
	건강보험료 지원	155	158	2	4	5	50	148	103
	의료비 지원	41	366	4	3	15	334	22	28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지원	53	167	7	20	11	141	35	6
	건강증진 지원	11	37	6	32	1	3	4	2
	보장구 지원	72	43	5	6	13	26	54	11
	소계	370	788	25	65	59	569	286	154
요양돌봄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30	155	3	7	8	120	19	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1	120	1	0.65	6	116	4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48	829	7	74	19	627	22	128
	소계	89	1,103	11	81	33	863	45	159
주거	주거비 지원	13	26	0	0	4	16	9	10
	주거자금 대출	9	70	1	7	0	0	8	63

76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주택시설 개선	92	122	1	2	12	42	79	78
	에너지(난방) 지원	49	383	0	0	9	352	40	31
	소계	163	602	2	9	25	411	136	182
고용	일자리 지원	99	723	11	52	10	307	78	364
	창업 지원	14	43	6	8	1	1	7	34
	직업능력-교육	66	367	20	257	9	55	37	56
	자활근로 지원	10	71	0	0	6	67	4	4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48	2,110	7	96	16	1,973	25	40
	장애인 일자리	15	62	5	19	5	38	5	5
	노인 일자리	100	1,298	6	13	21	1,125	73	159
	소계	352	4,674	55	446	68	3,567	229	661
	문화여가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118	260	8	87	19	75	91
여가/문화활동 지원(성인)		54	162	9	25	3	8	42	129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		166	541	15	50	4	5	147	486
여가/문화활동 지원(장애인)		29	80	11	42	6	36	12	2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215	6,302	4	4	51	6,071	160	227
소계		582	7,346	47	209	83	6,194	452	943
생계	수당 지원	37	313	2	10	10	284	25	19
	생활비용 지원	116	518	19	222	24	216	73	80
	생활자금 대출	87	429	0	0	0	0	87	429
	긴급구호 지원	68	529	3	2	6	502	59	25
	시설퇴소 자립 지원	36	298	3	6	21	290	12	2
	소계	344	2,086	27	239	61	1,292	256	555
재해보상	재해 구호 및 보상	53	5	4	1	1	0	48	4
	보훈 수당	253	1,371	13	115	0	0	240	1,256
	보훈단체 지원	39	483	5	7	8	447	26	28
	소계	345	1,859	22	124	9	447	314	1,288

주:1)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계" 기준임(시도-시군구 매칭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중복계상)

## 2.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특성 분석

□ 본 절에서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 “시·군·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은 당초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강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때 주요 변수만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며, 시도 본청사업은 사업 영역 및 유형이 다소 편포하고 있고, 사업수도 많지 않아,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경향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군구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사업 대상의 소득수준별 현황

○ 사업의 주 대상을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전국민) 대상사업이 76.2%(예산기준 80.8%),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10.3%,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은 2.6%, 기초보장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9%였음.

- 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1/4(예산 기준으로는 1/5)로 나타남.

○ 360개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사업 수 기준의 기초수급자 대상 사업,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임.

- 기초수급자 대상사업이 중앙 사업은 4.4%, 시군구 사업은 10.9%,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이 9.7%, 2.6%로 차이를 보임.

- 그러나 예산 기준으로 검토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사업의 경우 중앙 사업과 시군구 사업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중앙 7.3%, 시군구 8.7%). 반면, 차상위 대상 사업의 경우, 시군구 사업은 1.8%, 중앙 사업은 10.5%로 사업 수 기준 보다 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3-2-5〉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의 대상별 현황 및 예산

	사업 수 (개)	(%)	예산 (백만원)	(%)
기초수급자	470	(10.9)	69,903	(8.7)
차상위	112	(2.6)	14,186	(1.8)
저소득	442	(10.3)	71,075	(8.8)
일반	3,270	(76.2)	652,052	(80.8)
계	4,294	(100.0)	807,216	(100.0)

주:1)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계” 기준임(시도-시군구 매칭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중복계상)

〈표 3-2-6〉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대상별 현황 및 예산 비율 비교

	시군구 자체복지 사업		중앙 사회보장사업	
	사업 수의 비율(%)	예산액의 비율(%)	사업 수의 비율(%)	예산액의 비율(%)
기초수급자	10.9	8.7	4.4	7.3
차상위	2.6	1.8	9.7	10.5
저소득	10.3	8.8	15.3	7.3
일반	76.2	80.8	70.6	74.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강혜규 외(2015: 31).

□ 사업 대상의 생애주기별 현황

○ 다음은 사업의 주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로서,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19.6%가 아동, 37.8%가 성인, 나머지 42.7%는 일반(아동+성인) 대상 사업이었음.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사업이 23.2%, 성인사업이 42.6%, 일반(아동+성인)대상 사업이 34.3%였음.

○ 생애주기를 세분하여 보면, 노년층 대상 사업이 22.9%, 전체성인 대상 사업이 10.3%, 청소년 대상 사업이 6.5%, 전체아동 대상 사업이 5.5%의 순으로서, 노년층 대상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도 노년층 대상 사업이 26.6%, 전체성인 대상 사업 11.8%, 전체아동 대상 사업 7.7%, 영유아사업 6.8%로서, 노년층 대상 사업과 전체성인 대상 사업의 규모가 가장 컸음.

○ 중앙 사회복지사업의 사업 대상 분포와 비교해 보면, 지자체사업은 노인 대상이, 중앙 사회복지사업은 전체성인 대상 사업 비중이 높았음.

- 노인 대상의 지자체 사업은 22.9%(예산 기준 26.6%), 중앙사업은 10.3%(예산 기준, 12.7%)였으며, 전체성인 대상 중앙사업은 39.4%(예산 기준 43.4%), 지자체 사업은 10.3%(예산 기준 11.8%)로 차이를 보임.
- 예산 기준으로 지자체 사업과 중앙 사업을 비교해 보면, 아동, 청소년, 전체 아동, 중장년, 노년, 일반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영유아, 청년, 전체성인사업은 중앙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았음(수치는 다음 표 3-2-8 참조).

〈표 3-2-7〉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대상의 생애주기별 현황('15년 3월 기준)

		사업 수 (개)	(%)	예산 (백만원)	(%)
아동	영유아	155	3.6	54,879	6.8
	아동	171	4.0	16,752	2.1
	청소년	280	6.5	53,414	6.6
	전체 아동	235	5.5	61,973	7.7
	소계	841	19.6	187,018	23.2
성인	청년	37	0.9	7,029	0.9
	중장년	160	3.7	26,494	3.3
	노년	982	22.9	214,646	26.6
	전체 성인	442	10.3	95,426	11.8
	소계	1,621	37.8	343,595	42.6
일반(아동 및 성인)		1,832	42.7	276,603	34.3
계		4,294	100.0	807,216	100.0

주:1)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계” 기준임(시도-시군구 매칭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중복계상)

〈표 3-2-8〉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 대상의 생애주기별 현황 비교

		시군구 자체복지사업		중앙 사회보장사업	
		사업 수의 비율(%)	예산액의 비율(%)	사업 수의 비율(%)	예산액의 비율(%)
아동	영유아	3.6	6.8	4.7	14.1
	아동	4.0	2.1	1.9	0.8
	청소년	6.5	6.6	5.8	1.1
	전체 아동	5.5	7.7	13.3	5.3
	소계	19.6	23.2	25.8	21.3
성인	청년	0.9	0.9	2.2	7.0
	중장년	3.7	3.3	2.5	0.1
	노년	<b>22.9</b>	<b>26.6</b>	10.3	12.7
	전체 성인	10.3	11.8	<b>39.4</b>	<b>43.4</b>
	소계	37.8	42.6	54.4	63.2
일반(아동 및 성인)		<b>42.7</b>	<b>34.3</b>	19.7	15.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중앙정부 사업예산은 '14년 기준 국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교부금등)를 포함, 건강보험사업 및 국세감면 등 15개 사업은 미포함  
 자료: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강혜규 외(2015: 33).

□ 특수육구 대상 사업 현황

○ 특수 육구에 대응하는 시군구 사업을 파악한 결과, 장애인 대상의 사업이 747개, 전체 사업 대비 비율이 17.4%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국가유공자 대상 사업 7.8%, 독거노인 대상 사업 6.9%, 여성 대상 사업 6.0%,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 5.8%,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 5.4%의 순이었음.
-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장애인 대상 사업의 수가 52개(전체사업 대비 14.4%)로서, 지자체 자체 사업의 장애인 대상 사업 비율이 더 높았음(강혜규 외, 2015: 35).

〈표 3-2-9〉 시군구 자체복지사업의 대상 특성별 현황('15년 3월 기준)

	사업 수(개)	전체 사업 대비 비율(%)
장애인	747	17.4
국가유공자	337	7.8
독거노인	295	6.9
여성	257	6.0
다문화 가족	249	5.8
한부모 가족	232	5.4
소년소녀가장	151	3.5
조손가정	131	3.1
실업자	89	2.1
임산부	58	1.4
새터민	53	1.2

#### □ 급여유형 분석

- 다음은 급여 유형 현황을 파악한 결과로서, 프로그램 유형이 가장 많았음(사업 수 기준 42.9%, 예산 기준 41.0%).
  - 그 다음으로는 현금 급여유형이 36.1%, 현물 급여는 16.4%로서(예산 기준 40.7%, 9.4%)였음.
-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급여유형은 지자체사업 보다 상세하게 구분되었는데, 중앙사업의 경우 사업 수 기준, 예산 기준 모두 현금급여가 가장 많아서 그 비율은 전체 사업대비 각각 35.6%, 40.0%였음.
  - 전체 사업 중 현금급여의 비중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였음.

82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표 3-2-10〉 시군구 자체복지사업의 지원유형별 현황('15년 3월 기준)

	사업 수 (개)	(%)	예산 (백만원)	(%)
프로그램	1,841	(42.9)	330,558	(41.0)
현금 급여	1,549	(36.1)	328,493	(40.7)
현물 급여	703	(16.4)	75,504	(9.4)
대여/감면	123	(2.9)	45,391	(5.6)
바우처	47	(1.1)	18,802	(2.3)
시설 입소	31	(0.7)	8,469	(1.0)
계	4,294	(100.0)	807,216	(100.0)

주:1)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계” 기준임(시도-시군구 매칭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중복계상)

〈표 3-2-11〉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지원유형별 현황('14년 기준)

	사업 수 (개)			예산 (십억원)	(%)
	총 사업 수	(%)	예산파악 사업 수		
현금급여	128	(35.6)	116	21,409	(40.0)
현물서비스	55	(15.3)	48	8,712	(16.3)
현물대체급여	1	(0.3)	1	2	(0.0)
바우처	16	(4.4)	15	7,643	(14.3)
인건비지원	16	(4.4)	16	971	(1.8)
인적지원	22	(6.1)	22	615	(1.2)
프로그램연계급여	10	(2.8)	9	997	(1.9)
행정지원	15	(4.2)	15	111	(0.2)
감면	19	(5.3)	16	4,362	(8.2)
자금대여	21	(5.8)	17	7,680	(14.4)
사업자지원	3	(0.8)	3	67	(0.1)
기타	54	(15.0)	52	901	(1.7)
계	360	(100.0)	330	53,469	(100.0)

자료: 강혜규 외(2015: 40)를 보완작성함.

## □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 다음은 시군구의 유형별로 자체 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임. 1개 시군구당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수는 평균 20.7개였음.

- 서울시 자치구 21.2개, 광역시 자치구 19.3개, 인구 50만 이상 일반 시 28.5개, 인구 50만 미만 시 21.8개, 군 18.8개로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50만 이상 일반 시를 제외하고, 지역유형별 사업 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그러나 예산 기준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서울시 자치구는 4,264백만원, 광역시 자치구는 1,690백만원, 인구 50만 이상 일반 시는 12,080백만원, 인구 50만 미만 시는 4,612백만원, 군은 2,382백만원으로서,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액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군과 인구 50만 이상 일반시의 시군구 자체 복지예산액은 5배 가량의 차이를 보임.
- 1개 사업당 예산액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 자치구는 201백만원, 서울시 자치구는 88백만원, 인구 50만 이상 일반 시는 423백만원, 인구 50만 미만 시는 212백만원, 군은 127백만원으로서, 시군구 평균 자체 복지사업 예산 총액 규모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표 3-2-12〉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자체복지사업 현황

지자체 유형	분석포함 지자체 수	전체		1개 시군구 평균		1개 사업당 예산 (백만원)
		사업 수 (개)	예산 (백만원)	사업 수 (개)	예산 (백만원)	
서울 자치구	25	531	106,592	21.2	4,264	201
광역시 자치구	24	463	40,558	19.3	1,690	88
일반시(50만 이상)	15	428	181,194	28.5	12,080	423
일반시(50만 미만)	62	1,351	285,965	21.8	4,612	212
군	81	1,521	192,907	18.8	2,382	127
계	207	4,294	807,216	20.7	3,900	188

주: 1) 50만명 이상 거주시(2014.1월기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는 다음과 같음: 수원,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청주, 전주, 남양주, 안양, 천안, 화성, 김해, 포항

### 제3절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결과

#### 1.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유사한 지자체사업 현황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현황

○ 본 절에서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 360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을 검토함.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한 사업의 판별은 “사업의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고, ‘급여유형(제공형태, 급여·서비스·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 각 사업의 세부 급여내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일부가 유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제시하고 유사사업으로 분류함.

- 조정필요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상호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임.

○ <표 3-3-1>에 제시된 유사사업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총 1,496개, 9,997억원으로 확인됨.

- 사업 수로 보면, 자체사업 수가 가장 많은 생활지원 영역에서 374개, 다음으로는 보호돌봄 영역 219개, 생계 영역 219개였음.

-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유사 지자체 사업 중 보호돌봄 영역 사업이 36.9%를 차지했고, 생활지원 영역 16.3%, 생계영역 16.1%로서, 세 영역이 유사성이 있는 사업 중 2/3를 차지함.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영역별로 총 사업 대비 유사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유사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은 요양돌봄 영역(사업 수 기준 82.0%, 예산 기준 92.1%), 주거 영역(사업 수 기준 81.6%, 예산 기준 96.2%), 교육(사업 수 기준 65.1%, 예산 기준 72.7%), 생계(사업 수 기준 63.7%, 예산 기준 77.3%), 건강의료(사업 수 기준 51.1%, 예산 기준 70.2%)의 순이었음.

〈표 3-3-1〉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현황

	지자체 자체사업 (A)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지자체 사업 (B)				유사사업 비율 (B/A*100)	
	사업 수(개)	(%)	예산 (억원)	(%)	사업 수(개)	(%)	예산 (억원)	(%)	사업 수 (%)	예산 (%)
보호·돌봄	544	(9.2)	14,181	(21.9)	219	(14.6)	3,684	(36.9)	40.3	26.0
생활지원	2,861	(48.6)	31,446	(48.5)	374	(25.0)	1,626	(16.3)	13.1	5.2
교육	241	(4.1)	741	(1.1)	157	(10.5)	539	(5.4)	65.1	72.7
건강의료	370	(6.3)	788	(1.2)	188	(12.6)	553	(5.5)	51.1	70.2
요양돌봄	89	(1.5)	1,103	(1.7)	73	(4.9)	1,016	(10.2)	82.0	92.1
주거	163	(2.8)	602	(0.9)	133	(8.9)	579	(5.8)	81.6	96.2
고용	352	(6.0)	4,674	(7.2)	93	(6.2)	356	(3.6)	26.4	7.6
문화여가	582	(9.9)	7,346	(11.3)	21	(1.4)	30	(0.3)	3.6	0.4
생계	344	(5.8)	2,086	(3.2)	219	(14.6)	1,612	(16.1)	63.7	77.3
재해 보상	345	(5.9)	1,859	(2.9)	19	(1.3)	2	(0.0)	5.5	0.1
계	5,891	(100.0)	64,826	(100.0)	1,496	(100.0)	9,997	(100.0)	25.4	15.4

## □ 세부 사업유형(82개 유형)별 유사사업 검토 결과

○ 중앙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지자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된 사업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었음(155개, 158억원). 다음으로는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98개, 268억원), 생활자금 대출(84개, 397억원), 주택시설 개선(76개, 113억원), 장수수당(74개, 393억원)<sup>18)</sup>.

- 보호돌봄 영역: 보육교사 지원(58개, 2,043억원), 아동 돌봄 지원(42개, 189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37개, 159억원)
- 생활지원 영역: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98개, 268억원), 장수수당(74개, 393억원), 출산장려 지원(37개, 33억원), 폭력 피해예방 지원(32개, 20억원)
- 교육 영역: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44개, 214억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18)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함께 운영중으로서, 그러한 사업이 포함됨.

(43개, 144억원), 장애인 교육 지원(35개, 21억원)

- 건강-의료 영역: 건강보험료 지원(155개, 158억원)
- 요양-돌봄 영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45개, 821억원)
- 주거 영역: 주택시설 개선(76개, 113억원), 에너지(난방) 지원(38개, 378억원)
- 고용 영역: 노인 일자리(53개, 183억원)
- 생계 영역: 생활자금 대출(84개, 397억원), 긴급구호 지원(59개, 528억원), 생활비용 지원(42개, 393억원), 수당 지원(34개, 293억원)

〈표 3-3-2〉 중앙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억원)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합계		1,496	9,997	87	834	307	7,323	1,103	1,840
보호 돌봄	아동 돌봄 지원	42	189	6	8	7	104	29	77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7	6	1	0.2	1	1	5	4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16	123	7	108	4	14	5	1
	보육료 지원	26	971	1	33	17	927	8	11
	보육교사 지원	58	2,043	4	235	18	1,705	36	102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20	181	1	55	6	102	13	25
	지역아동센터 지원	37	159	1	13	16	106	20	39
	아동 급식	0	0	0	0	0	0	0	0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13	12	2	2	4	8	7	2
	소계	219	3,684	23	454	73	2,967	123	261
생활 지원	식사 지원	0	0	0	0	0	0	0	0
	위생 지원	25	13	0	0	0	0	25	13
	생활용품 지원	0	0	0	0	0	0	0	0
	이동 지원	0	0	0	0	0	0	0	0
	언론매체 접근 지원	0	0	0	0	0	0	0	0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6	9	1	1	3	8	2	0.4
	폭력 피해-예방 지원	32	20	3	1	6	13	23	6
	장수수당	70	383	1	21	1	50	68	312
장수수당, 효도수당	4	10	0	0	0	0	4	10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장수 축하	0	0	0	0	0	0	0	0
	장수 축하, 호도수당	0	0	0	0	0	0	0	0
	호도수당	0	0	0	0	0	0	0	0
	명절생일축하위원	0	0	0	0	0	0	0	0
	결혼장려 지원	0	0	0	0	0	0	0	0
	출산장려 지원	37	33	1	1	3	24	33	8
	장례 지원/ 묘비 정리	6	3	0	0	0	0	6	3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	0	0	0	0	0	0	0	0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7	200	0	0	5	194	12	7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19	294	6	7	10	286	3	0.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18	157	3	4	15	154	0	0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1	6	0	0	1	6	0	0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13	113	0	0	6	103	7	10
	여성 사회참여 권익증진 지원	0	0	0	0	0	0	0	0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98	268	2	6	23	228	73	34
	노숙인 지원	19	79	3	4	10	73	6	2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0	0	0	0	0	0	0	0
	복지관 운영	0	0	0	0	0	0	0	0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6	33	0	0	3	33	3	0.1
	시설 건립 및 개보수	0	0	0	0	0	0	0	0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0	0	0	0	0	0	0	0
	민간단체 지원	0	0	0	0	0	0	0	0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0	0	0	0	0	0	0	0
	행사 지원	0	0	0	0	0	0	0	0
	인식개선 및 권리증진 지원	0	0	0	0	0	0	0	0
	자원봉사 지원	0	0	0	0	0	0	0	0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3	5	0	0	1	3	2	1
	지역협력 및 민간참여 지원	0	0	0	0	0	0	0	0
	소계	374	1,626	20	45	87	1,175	267	407
교육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22	108	1	2	13	99	8	7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43	144	0	0	9	113	34	31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1	27	0	0	1	27	0	0
	장학금 지원	12	26	0	0	1	11	11	15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44	213	1	0.1	10	197	33	16
	장애인 교육 지원	35	21	4	2	4	11	27	8

88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평생교육	0	0	0	0	0	0	0	0
	소계	157	539	6	4	38	458	113	77
건강 의료	건강검진 지원	0	0	0	0	0	0	0	0
	건강보험료 지원	155	158	2	4	5	50	148	103
	의료비 지원	21	356	2	3	8	327	11	26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지원	2	1	0	0	0	0	2	1
	건강증진 지원	4	31	3	31	0	0	1	0.4
	보장구 지원	6	7	1	2	2	5	3	1
	소계	188	553	8	40	15	383	165	131
요양 돌봄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20	135	0	0	7	117	13	1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8	60	1	1	3	56	4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45	821	5	73	19	627	21	120
	소계	73	1,016	6	74	29	800	38	141
주거	주거비 지원	12	26	0	0	3	16	9	10
	주거자금 대출	7	62	0	0	0	0	7	62
	주택시설 개선	76	113	1	2	11	41	64	70
	에너지(난방) 지원	38	378	0	0	9	352	29	26
	소계	133	579	1	2	23	409	109	168
고용	일자리 지원	5	25	0	0	2	22	3	3
	창업 지원	9	33	5	2	0	0	4	32
	직업능력-교육	16	45	7	6	5	38	4	1
	자활근로 지원	8	67	0	0	4	63	4	4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2	0	0	1	2	0	0
	장애인 일자리	1	1	0	0	0	0	1	1
	노인 일자리	53	183	2	5	5	69	46	109
소계	93	356	14	13	17	194	62	149	
문화 여가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5	6	0	0	3	6	2	0.2
	여가/문화활동 지원(성인)	1	0	0	0	0	0	1	0.1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	14	23	0	0	0	0	14	23
	여가/문화활동 지원(장애인)	1	1	0	0	0	0	1	1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0	0	0	0	0	0	0	0
	소계	21	30	0	0	3	6	18	24
생계	수당 지원	34	293	2	10	9	267	23	16
	생활비용 지원	42	393	5	191	8	160	29	41
	생활자금 대출	84	397	0	0	0	0	84	397

		중양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총계		시도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긴급구호 지원	59	528	2	2	5	502	52	24
	시설퇴소 자립 지원	0	0	0	0	0	0	0	0
	소계	219	1,612	9	204	22	929	188	479
재해 보상	재해 구호 및 보상	19	2	0	0	0	0	19	2
	보훈 수당	0	0	0	0	0	0	0	0
	보훈단체 지원	0	0	0	0	0	0	0	0
	소계	19	2	0	0	0	0	19	2

## 2. 지자체 사업 세부 유형별 유사사업 사례

□ 다음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을 10개 분류, 82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중앙 정부 360개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성이 발견된 사업을 상세하게 제시함.

○ 사업유형별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고, “유사 중앙부처사업”의 사업명과 지자체 사업과 유사한 세부 내용을 제시함.

-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현황”은 시도사업,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시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유사사업의 개수와 예산액을 제시함.

### 가. 보호·돌봄 영역

□ 아동 돌봄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아동 돌봄 지원	7	10	10	108	29	77	6	8	7	104	29	77

- (주요 내용) 아동 돌봄 지원은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보육에 필요한 장난감 대여, 육아정보 제공, 공동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육아지원센터 장난감 구비 등 시설지원을 포함
  -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비용의 지원은 ‘보육료 지원’으로 분류
    - 예컨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은 ‘아동 돌봄 지원’으로, 가정양육 수당이나 가정보육교사 이용료 지원 등은 ‘보육료 지원’으로 분류
- (유사 중앙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보건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보건복지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의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보육 및 육아 서비스 제공, 육아상담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의 방과후교실, 방학교실, 상담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 서비스가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7개 있으며, 이 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장애아가족양육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6개로 총 예산은 8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10개 있으며, 이 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7개로 총 예산은 104억 원
  - (시·군·구 사업)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29개로 모두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77억 원

## □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4	4	1	1	13	5	1	0.2	1	1	5	4

-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어린이북카페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청소년증발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학교폭력 및 학대피해 관련 사업, 유해환경 단속, 비행 예방 및 선도, 실종 아동 관련 사업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에 포함
- (유사 중앙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여성가족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청소년활동지원’의 농어촌청소년 대학탐방활동, 청소년문화활동프로그램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지역아동센터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4개 있으며 이 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로 예산은 2천만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1개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와 유사성이 있으며 예산은 1억 원

- (시·군·구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13개이며,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청소년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4억 원

□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16	246	12	18	34	17	7	108	4	14	5	1

-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및 치료, 학대아동보호, 요보호아동 구호 및 지원, 청소년선도 및 보호,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학교밖 청소년지원(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여성가족부), 매체활용 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지원(여성가족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보건복지부)
  - ‘학교 밖 청소년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의 대안프로그램, 성교육,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쉼터 운영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의 학대피해아동 및 실종아동에 대한 구호 및 보호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치료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청소년유해환경개선’의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선도 및 보호,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및 단속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의 부모교육, 부모-자녀 대화법 교육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청소년활동지원’의 학교폭력예방, 예절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문화체험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사업이 16개 있으며 이 중 학교밖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매체활용 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7개로 총 예산은 108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사업은 12개 있으며, 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14억 원
- (시·군·구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사업은 34개이며, 이 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청소년 활동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1억 원

□ 보육료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보육료 지원	1	33	18	931	8	11	1	33	17	927	8	11

- (주요 내용) 보육료 지원은 해당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입소료,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지원만을 포함하며 가정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및 양육비 지원, 아이돌보미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은 ‘아동 돌봄 지원’에 포함
- (유사 중앙사업)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보건복지부),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방과후보육료지원’의 어린이집보육료, 입소료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은 1개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며 총 예산은 33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은 18개이며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방과후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이 중 17개로 총 예산은 927억 원
  - (시·군·구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은 8개로 모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며 총 예산은 11억 원

## □ 보육교사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보육교사 지원	8	235	20	1,919	39	103	4	235	18	1,705	36	102

- (주요 내용) 보육교사 지원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보건복지부),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보육교사 지원” 사업은 8개 있으며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235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보육교사 지원” 사업은 20개 있으며, 이 중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8개로 총 예산은 1,705억 원
  - (시·군·구 사업) “보육교사 지원” 사업은 39개로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6개로 총 예산은 102억 원

□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12	86	39	4,088	95	366	1	55	6	102	13	25

- (주요 내용)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은 보육시설과 재원아동을 대상으로 보험료, 운영비, 인건비, 간식비, 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단, 인건비의 경우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직접적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인력에 대한 지원은 ‘보육교사 지원’으로 분류하고 취사원, 차량운전기사 등 교육 및 보육서비스 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만을 포함
- (유사 중앙사업)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고용노동부)
  -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의 종사자 수당 및 인건비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사업은 12개 있으며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로 예산은 55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사업은 39개 있으며, 이 중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6개로 총 예산은 102억 원
  - (시·군·구 사업)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사업은 95개이며, 이 중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유사성이 있

는 사업은 13개로 총 예산은 25억 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지역아동센터 지원	1	13	16	106	20	39	1	13	16	106	20	39

- (주요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지수당, 교재교구비, 아동 문화체험 및 활동, 난방비 및 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지수당, 교재교구비, 아동 문화체험 및 활동, 난방비 및 시설 보강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1개 있으며,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 13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16개 있으며, 모두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06억 원
  - (시·군·구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20개이며 모두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39억 원

□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11	23	25	669	56	35	2	2	4	8	7	2

- (주요 내용)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은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과 그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축하금 등을 지급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단,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비나 학용품비 등으로 목적과 항목이 명시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상이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이라 하더라도 각 서비스 목적에 해당하는 분류에 포함
- (유사 중앙사업) 입양비용지원(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보건복지부)
  - ‘입양비용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의 양육비지원, 입양비용보조, 입양축하금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사업은 11개 있으며 이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로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사업은 25개 있으며, 이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8억 원
  - (시·군·구 사업)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사업은 56개이며, 이 중 입양비용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7개로 총 예산은 2억 원

## 나. 생활지원 영역

### □ 위생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위생 지원	0	0	8	58	81	96	0	0	0	0	25	13

- (주요 내용) 장애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목욕차량지원, 목욕비 지원, 장애인전용 목욕탕지원 사업, 무료세탁지원, 이동 빨래방,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신체 위생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 단, 목욕비 지원서비스, 목욕탕 운영지원 사업은 유사검토에서 제외
- (유사 중앙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 재가급여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복지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목욕보조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동 목욕서비스, ‘재가급여사업’의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이 재가이동목욕서비스를 지자체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파악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위생 지원” 사업유형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위생 지원” 사업유형이 8개이며,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위생 지원” 사업유형은 81개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재가급여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5개, 예산은 13억 원

□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13	52	14	181	69	74	1	1	3	8	2	0.4

- (주요 내용)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전화상담, 멘토-멘티사업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상담, 학교방문상담, 노인 상담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 지자체 사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cys-net, 1388상담,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유사사업 판단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은 폭력 피해·예방 지원유형에 포함
- (유사 중앙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여성가족부), 노숙자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사업(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등 제시한 중앙사업의 내용 중 상담서비스와 지자체사업의 유사성이 있음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사업 유형이 13개 있으며 이 중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로 예산 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사업 유형이 14개 있으며, 이 중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노숙자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로 총 예산은 8억 원

- (시·군·구 사업)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사업 유형이 69개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 총 예산은 0.4억 원

#### □ 폭력 피해-예방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폭력피해-예방지원	17	128	20	72	41	11	3	1	6	13	23	6

- (주요 내용)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 성폭력 피해상담소,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대검찰청),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및 지원(여성가족부) 사업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의 상담지원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과 지자체의 대상별 성교육사업내용이 유사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의 피해여성 보호시설운영과 지자체사업이 유사
    - 중앙부처 사업에 없는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은 유사 범주에서 제외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폭력피해-예방지원” 사업 유형이 17개 있으며 이 중 중앙부처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로 예산은 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폭력피해-예방지원” 사업 유형이 20개 있으며, 이 중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6개로 예산은 13억 원
- (시·군·구 사업) “폭력피해-예방지원” 사업 유형이 41개 있으며 이 중 중앙부처의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3개로 예산은 6억 원

□ 장수수당, 효도수당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수수당	1	21	1	50	68	312	1	21	1	50	68	312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0	0	0	0	4	10	0	0	0	0	4	10

〈장수수당〉

- (주요 내용) 관내 거주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사업의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수수당” 사업 유형이 1개 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기초연금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며 예산은 2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수수당” 사업 유형이 1개 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기초연금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며 예산은 50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수수당” 사업 유형이 68개 있으며 모든 사업이 중앙부처의 기초연금 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예산은 312억 원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사업 유형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사업 유형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사업 유형이 4개 있으며, 중앙부처 사업인 기초연금과 모두 유사성 있고 예산은 10억 원

□ 출산장려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출산장려 지원	8	18	8	472	136	471	1	1	3	24	33	8

- (주요 내용) 관내 거주 출생아를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첫돌 축하 등의 현금지급 사업, 산모들을 위한 출산관련 교육사업
- (유사 중앙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여성가족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태아 1인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는 지자체 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출산장려 지원” 사업 유형이 8개 있으며, 중앙부처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1개, 예산은 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출산장려 지원” 사업 유형이 8개 있으며, 중앙부처

-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3개, 예산은 24억 원
- (시·군·구 사업) “출산장려 지원” 사업 유형이 136개 있으며, 중앙부처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33개, 예산은 8억 원

□ 장례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례 지원	0	0	1	0.4	99	99	0	0	0	0	6	3

- (주요 내용) 기초보장수급자, 무연고자의 장제비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 거주자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포함
- (유사 중앙사업) 장제급여(보건복지부) 사업
  - ‘장제급여’사업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장제비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 수급자 장제비 지원사업만 유사한 것으로 포함하였으며, 무연고자, 지역 거주자 장제비지원은 유사사업에서 제외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례 지원” 사업 유형이 시도사업에는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례 지원” 사업 유형이 1개 있으며,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장례 지원” 사업 유형이 99개 있으며, 중앙부처사업인 장제급여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6개로 예산은 3억 원

##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2	18	10	246	33	16	0	0	5	194	12	7

- (주요 내용)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안부서비스, 건강음료 지원, 사랑의안심폰서비스 등 보호, 안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보건복지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보건복지부) 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독거노인 대상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의 전화안부서비스, 독거노인상담전화, 응급상황 모니터링 서비스가 유사
    - 지자체 사업 중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현물(건강음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유사 범주에서 제외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유형이 2개 있으나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유형이 10개 있으며 중앙사업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5개, 예산은 194억 원
  - (시·군·구 사업)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유형이 33개 있으며 중앙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과 유사한 사업은 12개, 예산은 7억 원

□ 장애인 일상생활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28	125	50	1,127	84	68	6	7	10	286	3	0.2

- (주요 내용) 장애인의 일상 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유형으로서, 편의시설 운년,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및 교육, 운전면허 취득 지원, 점자도서관 등이 해당
- (유사 중앙사업)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보건복지부),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보건복지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미래부)
  -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사업 중 운전면허 취득사업과 유사
  -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장애관련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등급심사경비지원 사업과 유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상담 및 기술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직업, 가족관련 상담서비스와 유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사업 유형은 28개가 있으며, 중앙사업인 통신중계서비스제공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6개로 예산은 7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사업 유형은 50개가 있으

며, 중앙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통신 중계서비스제공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10개로 예산은 286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사업 유형이 84개 있으며 중앙사업인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3개로 예산은 2천만 원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	38	141	46	259	54	84	3	4	15	154	0	0

- (주요 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자립지원센터, 재활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원 등
- (유사 중앙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여성가족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서비스가 유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장애인 가족 일시돌봄 서비스 내용이 유사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과 지자체의 심리치료 및 언어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유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과 지자체의 장애인가족상담 서비스가 유사
  -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과 지자체의 척수장애인 대상 종합상담, 사회복지, 생활체육서비스 제공이 유사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지자체의 여성장애인 인권, 사회참여촉진서비스가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 사업 유형은 38개가 있으며, 중앙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3개로 예산은 4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 사업 유형은 46개가 있으며, 중앙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15개로 예산은 154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 사업 유형은 54개가 있으며, 중앙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아동 재활-복지지원	2	4	4	22	12	2	0	0	1	6	0	0

- (주요 내용) 장애아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지원 사업
- (유사 중앙사업)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의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아동 재활-복지지원” 사업 유형은 2개가 있으며,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아동 재활-복지지원” 사업 유형은 4개가 있으며, 중앙사업의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은 1개로 예산은 6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애아동 재활-복지지원” 사업 유형은 12개가 있으며,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음

□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7	25	11	145	24	29	0	0	6	103	7	10

- (주요 내용) 건강가정육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가족 단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사업
- (유사 중앙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의 가족기능강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과 지자체의 학용품지원, 생활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지원” 사업 유형은 7개가 있으며, 중

양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지원” 사업 유형은 11개가 있으며, 중앙사업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과 유사한 사업은 6개로 예산은 103억 원
- (시·군·구 사업)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지원” 사업 유형이 24개가 있으며,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7개로 예산은 10억 원

□ 다문화/새터민 정착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다문화/새터민 정착지원	11	28	36	259	162	67	2	6	23	228	73	34

-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새터민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 모국방문 지원, 부모모임, 한국문화체험,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통·번역서비스, 새터민 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서비스(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여성가족부), 다문화 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통일부)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다문화가족 상담, 부부관계 증진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한국어교육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의 내용이 지자체에서 정착물품을 지원하는 사

### 업과 유사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금지원'과 지자체에서 정착을 위한 활동비, 지원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유사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과 지자체의 가족사회생활 의사소통지원 사업 내용리 유사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역량강화서비스 제공내용이 유사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서비스'사업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모임 형성내용이 유사
- '다문화보육료지원'사업과 지자체의 자녀를 위한 보육관련(생일, 입학금, 생활비) 지원내용이 유사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과 지자체의 취외국인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유사
-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과 지자체의 여성결혼이민자 강사채용 사업이 유사
  - 중앙부처 사업 내용에 없는 지자체의 이민자 친정보내기, 문화체험 사업은 유사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다문화/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유형은 11개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2개로 예산은 6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다문화/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유형은 36개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23개로 예산은 228억 원
- (시·군·구 사업) “다문화/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유형은 162개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서비스, 다문화보육료지원, 외국인근로자등 의료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73개로 예산은 34억 원

□ 노숙인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노숙인 지원	4	4	15	98	159	30	3	4	10	73	6	2

- (주요 내용) 노숙인에게 구호, 응급조치, 귀향여비 지급, 시설입소 지원, 거리 노숙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노숙인등 복지지원(보건복지부)
  - ‘노숙인등 복지지원’ 사업의 노숙인 시설운영 지원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지자체 사업 중 노숙인 개인에게 귀향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노숙인 지원” 사업 유형은 4개 있으며, 그 중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3개로 예산은 4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노숙인 지원” 사업 유형은 15개 있으며, 그 중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10개로 예산은 73억 원
  - (시·군·구 사업) “노숙인 지원” 사업 유형은 159개 있으며, 그 중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6개로 예산은 2억 원

## □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5	216	99	6,278	50	108	0	0	3	33	3	0.1

- (주요 내용)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인생활시설 등 단기 및 장기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그 입소자의 생활,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여성가족부)
  - ‘장애인생활 시설 실비입소 이용료지원’ 사업의 시설이용료 지원 내용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입소자 의료서비스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및 운영’과 지자체의 그룹홈을 통한 학대아동의 보호 및 지원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사업 유형이 5개 있으나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사업 유형이 99개 있으며 중앙사업의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3개로 예산은 33억 원
  - (시·군·구 사업)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사업 유형이 50개 있으며 중앙사업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과 유사한 사업이 3개, 예산은 1천만 원

□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1	3	3	370	8	18	0	0	1	3	2	1

- (주요 내용)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보건복지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부)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사례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지자체 사업과 유사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약동에게 지원망 구축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사업 유형사업이 1개 있으나 중앙사업과 유사한 지자체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사업 유형사업이 3개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1개로 예산은 3억 원
  - (시·군·구 사업)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사업 유형사업이 8개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2개로 예산은 1억 원

## 다. 교육 영역

### □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1	2	14	101	8	7	1	2	13	99	8	7

○ (주요 내용)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은 초·중·고교 아동과 대학 진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학교 등록금, 입학금으로 명시되지 않은 학업보조금 등은 ‘교육비(학원비 등)’로 분류하고 성적우수나 품행 등의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장학금 지원’으로 분류

○ (유사 중앙사업) 국가장학금(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교육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초·중·고교 등록금, 입학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국가장학금’의 고교생 대학진학시 등록금, 입학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사업은 1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사업은 14개 있으며, 이 중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3개로 총 예산은 99억 원
- (시·군·구 사업)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사업은 8개로 모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자녀교육비(학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과 유사성이 있으며 총 예산은 7억 원

□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0	0	9	113	35	31	0	0	9	113	34	31

○ (주요 내용) 교육비(학습관련) 지원은 초·중·고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인터넷강의·방문학습지 수강료 및 교재비, 검정고시·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학습장려수당 및 보조학습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 지원은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으로 분류하며 성적우수나 품행 등의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장학금 지원’으로 분류
- 비용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은 ‘학습지원(공부방 포함)’으로 분류(예를 들어, 방문학습지수강료 지원은 ‘교육비(학습관련) 지원’으로, 방문교사 파견은 ‘학습지원(공부방 포함)’으로 분류).

○ (유사 중앙사업)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교육부), 고교학비지원(교육부)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요보호아동에 대한 학원 수강료, 교재비 지원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사업은 9개로 모두 교육

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 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13억 원

- (시·군·구 사업)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사업은 35개이며, 이 중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등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4개로 총 예산은 31억 원

#### □ 장학금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학금 지원	0	0	1	11	12	15	0	0	1	11	11	15

○ (주요 내용) 장학금 지원은 초·중·고교 아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명에 장학금이라고 명시되거나 성적우수나 품행 등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학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성적우수나 품행 등의 기준 없이 소득기준이나 가구형태 등의 기준만 있는 경우 ‘교육비(학습관련) 지원’으로 분류하고 성적기준이나 선행 등의 기준이 있는 경우 ‘장학금 지원’으로 분류

○ (유사 중앙사업) 국가장학금(교육부),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 ‘국가장학금’의 대학생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교육급여’의 초·중·고교 아동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이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은 1개로 국가장학금과 유사성이 있으며 총 예산은 11억 원

- (시·군·구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은 12개이며, 이 중 국가장학금, 교육급여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1개로 총 예산은 15억 원

□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학습 지원 (공부방 포함)	1	0.1	10	197	45	40	1	0.1	10	197	33	16

- (주요 내용)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등을 통한 방문 교육, 공부방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간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여성가족부)
  -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의 학습공간 및 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지원” 사업은 1개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과 유사성이 있으며 예산은 1천 만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지원” 사업은 10개로 모두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97억 원
  - (시·군·구 사업)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지원” 사업은 45개이며, 이 중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3개로 총 예산은 16억 원

## □ 장애인 교육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인 교육 지원	5	3	8	19	50	17	4	2	4	11	27	8

- (주요 내용) 장애인 교육 지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습, 수화나 점자 등의 특수 교육, 재활 교육, 예체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학비의 경우 일반학교 및 대학등록금 지원은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으로 분류하고 특수학교 등록금 등 장애 관련 교육에 대한 비용만 포함.
- (유사 중앙사업)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자녀 교육비(학비)지원(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지원(보건복지부), 장애인 정보화교육(미래창조과학부)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지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초재활교육, 점자교육, 보행교육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의 사회적응능력 및 직업능력, 인문교육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수화교육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장애인자녀 교육비(학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치료비, 재활비, 학비 지원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PC교육,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정 운영 지원 등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발달재활서비스’의 언어재활, 감각재활, 인지재활 활동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은 5개 있으며 이 중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4개로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은 8개 있으며 이 중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학비)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11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은 50개이며, 이 중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학비)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7개로 총 예산은 8억 원

라. 건강의료 영역

□ 건강보험료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건강보험료 지원	2	4	5	50	148	103	2	4	5	50	148	103

- (주요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조손 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금면제(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면제’와 지자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유형은 2개 있으며, 모두 의료급여본인부담금면제 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4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유형은 5개 있으며, 모두 의료급여본인부담금면제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50억 원
- (시·군·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유형은 148개이며, 모두 의료급여본인부담금면제 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03억 원

#### □ 의료비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의료비 지원	4	3	15	334	22	28	2	3	8	327	11	26

- (주요 내용)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요보호 아동, 성폭력 피해자, 여성폭력관련보호시설, 시설 수급자, 행려자(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임부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 비상약품, 비급여 진료비, 생계비 및 귀환여비, 해산비 및 장제비, 기초검진비, 백내장 수술비, 신장투석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및 수리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CT·초음파 검사비·외래통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의료급여(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보건복지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여성가족부),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국가보훈처)
  - ‘의료급여(의료급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지자체의 의료비지원 내용이 유사

-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과 지자체의 백내장수술비지원 내용이 유사
- ‘난임부부수술비지원’과 지자체의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유형은 4개 있으며, 이 중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로 총 예산은 3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유형은 15개 있으며, 이 중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8개로 총 예산은 327억 원
- (시·군·구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유형은 22개이며, 이 중 의료급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1개로 총 예산은 26억 원

□ 장애 의료재활-치료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 의료재활-치료 지원	7	20	11	141	35	6	0	0	0	0	2	1

- (주요 내용) 장애 재활치료 지원은 청각장애인, 출산한 여성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출산지원금(50~100만원), 치료비(월14~22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50~100만원) 지원 내용이 유사

##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 재활치료 지원” 사업 유형이 7개 있으나, 이 중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 재활치료 지원” 사업 유형이 11개 있으나, 이 중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장애 재활치료 지원” 사업 유형은 35개이며, 이 중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로 총 예산은 1억 원

## □ 건강증진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건강증진 지원	6	32	1	3	4	2	3	31	0	0	1	0.4

- (주요 내용) 건강증진 지원은 임신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임신부 교실 운영,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가임기여성 산전검사 등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정실진환에 대한 교육, 정실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알코올 환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포함)(보건복지부), 노숙자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자체의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지원 내용이 유사
  - ‘정신보건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포함)’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지원 내용이 유사

-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과 지자체의 알코올 환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유형은 6개 있으며, 이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포함)사업, 노숙자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로 총 3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유형은 1개 있으며, 중앙부 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군·구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유형은 4개이며, 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로 총 예산은 4천만원

□ 보장구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보장구 지원	5	6	13	26	54	11	1	2	2	5	3	1

- (주요 내용) 보장구 지원은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콘, 화상전화기)구입비,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지원, 노인 보행보조차, 어르신 틀니,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보건복지부), 노인 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교부(보건복지부)
  -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 지자체의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내용이 유사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지자체의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비지원 내용이 유사

-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과 지자체의 어르신 틀니 지원 내용이 유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보장구 지원” 사업 유형은 5개 있으며, 이 중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보장구 지원” 사업 유형은 13개 있으며, 이 중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사업,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 총 예산은 5억 원
- (시·군·구 사업) “보장구 지원” 사업 유형은 54개 있으며, 이 중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 총 예산은 1억 원

## 마. 요양돌봄 영역

### □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3	7	8	120	19	27	0	0	7	117	13	18

- (주요 내용)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입원중인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사지원, 안 전확인, 간병 등의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보건복지부), 재가급여(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보건복지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지원서비스 내용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재가급여’와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내용이 유사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지자체의 가사지원서비스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사업유형은 3개 있으며, 이중 중앙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사업은 8개 있으며, 이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7개로 총 예산은 117억 원
  - (시·군·구 사업)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사업은 19개이며, 이 중 재가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3개로 총 예산은 18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	1	6	116	4	3	1	1	3	56	4	3

-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재가급여(보건복지부), 시설급여(보건복지부)
  -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내용이 유사
  -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유형은 1개 있으며, 이는 재가급여와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유형은 3개 있으며, 재가급여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56억 원
  - (시·군·구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유형은 4개 있으며, 모두 재가급여, 시설급여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3억 원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7	74	19	627	22	128	5	73	19	627	21	120

-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장애인활동지원(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의 지원 대상과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지원 등 서비스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유형은 7개 있으며,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73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유형은 19개 있으며, 모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627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유형은 22개 있으며,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1개로 총 예산은 120억 원

**바. 주거 영역**

□ 주거비 지원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주거비 지원	0	0	4	16	9	10	0	0	3	16	9	10

- (주요 내용)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비, 주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주거급여(보건복지부), 영구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 기존 주택전세임대(국토교통부)
  - ‘주거급여’의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 내용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영구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임차료 및 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 내용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유형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유형은 4개 있으며, 이 중 주거급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로 총 예산은 16억 원
- (시·군·구 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유형은 9개 있으며, 모두 주거급여, 기존주택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0억 원

#### □ 주거자금 대출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주거자금 대출	1	7	0	0	8	63	0	0	0	0	7	62

- (주요 내용) 주거자금 대출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용자금, 주거환경 개선 및 개량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자금(국토교통부),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자금’의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개량 자금의 용자지원 내용이 지자체사업과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주거자금 대출” 사업유형은 1개 있으며 이 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주거자금 대출” 사업유형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주거자금 대출” 사업유형은 8개 있으며, 이 중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주거환경 개선자금사업, 농촌주택 개량자금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7개로 총 예산은 62억 원

□ 주택시설 개선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주택시설 개선	1	2	12	42	79	78	1	2	11	41	64	70

- (주요 내용) 주택시설 개선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서비스, 불량 및 노후 시설 교체, 편의 및 안전시설 보강, 전기설비 안전 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주거급여(보건복지부)<sup>19)</sup>, 주거환경 개선자금(국토교통부),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환경부),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보건복지부)
  - ‘주거급여’, ‘주거환경개선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 및 서비스 지원 내용이 유사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의 불량 및 노후 시설 교체, 편의 및 안전시설 보강 지원 내용이 유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서비스 내용이 유사

19) 2014년 기준으로 맞춤형급여 개편 이전 기준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 장애인 가구 내 편의시설 및 안정장치의 설치 등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주택시설 개선” 사업유형은 1개 있으며 모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주택시설 개선” 사업유형은 12개 있으며 이 중 주거급여,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1개로 총 예산은 41억 원
- (시·군·구 사업) “주택시설 개선” 사업유형은 79개 있으며 주거급여, 주거환경 개선자금,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농촌주택 개량자금지원,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64개로 총 예산은 70억 원

□ 에너지(난방)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에너지(난방) 지원	0	0	9	352	40	31	0	0	9	352	29	26

- (주요 내용) 에너지(난방)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보일러 등 난방물품을 수리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내용이 유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의 보일러 등 난방물품 수리 및 보급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에너지(난방) 지원” 사업유형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에너지(난방) 지원” 사업유형은 9개 있으며, 이 중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9개로 총 예산은 352억 원
- (시·군·구 사업) “에너지(난방) 지원” 사업유형은 40개 있으며, 이 중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9개로 총 예산은 26억 원

사. 고용 영역

□ 일자리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일자리 지원	11	52	10	307	78	364	0	0	2	22	3	3

- (주요 내용)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 적성 검사, 맞춤형 취업알선, 취업 교육 및 훈련,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고용노동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구직 상담, 맞춤형 취업 알선, 취업 교육 및 훈련,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일자리 창출 내용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취업(정보)센터운영 등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유형은 11개 있으며, 이 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유형은 10개 있으며, 이 중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로 총 예산은 22억 원
- (시·군·구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유형은 78개 있으며, 이 중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로 총 예산은 3억 원

## □ 창업 지원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창업 지원	6	8	1	1	7	34	5	2	0	0	4	32

- (주요 내용)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운영에 필요한 창업 자금 용자, 창업 및 기업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중소기업청), 여성 창업지원(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용자)(중소기업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생업자금(보건복지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창업지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의 창업 및 기

업운영 교육, 컨설팅 지원 내용이 유사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의 운영비 지원 내용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저소득층생업자금', '소상공인지원(용자)'의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자금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창업 지원” 사업유형은 6개 있으며, 이 중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창업 지원” 사업유형은 1개 있으나,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창업 지원” 사업유형은 7개 있으며, 이 중 저소득층 생업 자금, 소상공인지원(용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32억 원

□ 직업능력-교육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직업능력-교육 지원	20	257	9	55	37	56	7	6	5	38	4	1

- (주요 내용) 직업능력-교육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및 취업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자격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취약계층전담 취업지원사업(고용노동부), 노숙인등 복지 지원(보건복지부),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보건복지부), 청소년

### 특별지원(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약계층전담취업지원사업'의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상담 지원 내용이 유사
-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청소년 특별지원', '노숙인 등 복지지원'의 직업 훈련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지원 내용이 유사

####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직업능력-교육” 사업유형은 20개 있으며, 이 중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취약계층 전담취업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7개로 총 예산은 6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직업능력-교육” 사업유형은 9개 있으며, 노숙인 등 복지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38억 원
- (시·군·구 사업) “직업능력-교육” 사업유형은 37개 있으며, 이 중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청소년 특별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1억 원

#### □ 자활근로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자활근로 지원	0	0	6	67	4	4	0	0	4	63	4	4

- (주요 내용) 자활근로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고취, 기술습득 지원, 근로기회제공, 자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자활근로(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보건복지부), 지역 자활센터 운영(보건복지부)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기술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지원 내용이 유사
- ‘노숙인 등 복지지원’의 자활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자활근로 지원” 사업유형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자활근로 지원” 사업유형은 6개 있으며,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노숙인등 복지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예산은 63억 원
- (시·군·구 사업) “자활근로 지원” 사업유형은 4개 있으며, 모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4억 원

□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7	96	16	1,973	25	40	0	0	1	2	0	0

- (주요 내용)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 훈련,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보건복지부)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의 장애인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 훈련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유형은 7개 있으나, 유사성이 있

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유형은 16개 있으며,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 총 예산은 2억 원
- (시·군·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유형은 25개 있으나,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장애인 일자리 지원	5	19	5	38	5	5	0	0	0	0	1	1

- (주요 내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보건복지부)
  -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의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지원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이 5개 있으나, 유사성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이 5개 있으나, 유사성 있는 사업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은 5개 있으며, 이 중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제공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개로 총 예산은 1억 원

□ 노인 일자리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노인 일자리	6	13	21	1,125	73	159	2	5	5	69	46	109

- (주요 내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노인 고용업체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고용노동부), 고령자 다수고용지원(고용노동부)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근로 가능한 노인의 일자리 지원내용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 다수고용지원’의 노인 고용업체 지원 내용이 유사
    - 노인취업알선센터, 시니어클럽운영 등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6개 있으며, 이 중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로 총 예산은 5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21개 있으며, 이 중 노인 사회활동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69억 원
  - (시·군·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73개 있으며, 이 중 노인 사회활동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 다수고용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46개로 총 예산은 109억 원

## 아. 문화여가 영역

□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여가문화활동 지원	43	205	32	124	292	715	0	0	3	6	18	24
여가문화활동 지원 (노인)	8	87	19	75	91	98	0	0	3	6	2	0.2
여가문화활동 지원 (성인)	9	25	3	8	42	129	0	0	0	0	1	0.1
여가문화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15	50	4	5	147	486	0	0	0	0	14	23
여가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11	43	6	36	12	2	0	0	0	0	1	1

- (주요 내용) 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노인예술단 지원, 문화상품권,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국제교류 활동,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 청소년 축제, 장애인 문화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고령층 정보화교육(미래창조과학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활동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여성가족부)
  - '고령층 정보화교육'과 지자체의 인터넷 교육지원 내용이 유사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과 지자체의 노인예술단지원 내용이 유사
  - '통합문화이용권'과 지자체의 문화상품권지원 내용이 유사
  - '청소년 활동지원'과 지자체의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내용이 유사

- ‘청소년 국제교류’과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 내용이 유사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과 지자체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 유사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과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동아리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여가문화활동 지원” 사업 유형은 43개 있으나, 이 중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여가문화활동 지원” 사업 유형은 32개 있으며, 이 중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3개로 총 예산은 6억 원
- (시·군·구 사업) “여가문화활동 지원” 사업 유형은 292개 있으며, 이 중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통합문화이용권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8개로 총 예산은 24억 원

자. 생계 영역

□ 수당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당 지원	2	10	10	284	25	19	2	10	9	267	23	16

- (주요 내용) 수당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렵거나 특정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양육비 지원, 장애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의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지자체 사업과 유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수당 지원” 사업유형은 2개 있으며, 모두 장애인 연금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총 예산은 10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수당 지원” 사업유형은 10개 있으며,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9개로 총 예산은 267억 원
- (시·군·구 사업) “수당 지원” 사업유형은 25개 있으며, 이 중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3개로 총 예산은 16억 원

□ 생활비용 지원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생활비용 지원	19	222	24	216	73	80	5	191	8	160	29	41

○ (주요 내용) 생활비용 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후원금, 결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기초생활)생계급여(보건복지부), 장애급여(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보건복지부), 아동 통합서비스지원(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여성가족부),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 기관 운영(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여성가족부)

-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계급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에너지바우처’,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의 생활비, 양육비,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지원내용이 유사
- ‘희망키움통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의 매칭금, 후원금, 결연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생활비용 지원” 사업유형은 19개 있으며, 이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계급여,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191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생활비용 지원” 사업유형은 24개 있으며, 이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희망키움통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8개로 총 예산은 160억 원
- (시·군·구 사업) “생활비용 지원” 사업유형은 73개 있으며, 이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제급여, 에너지바우처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9개로 총 예산은 41억 원

□ 생활자금 대출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생활자금 대출	0	0	0	0	87	429	0	0	0	0	84	397

- (주요 내용) 생활자금 대출사업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을 용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근로자생활안전자금대부(고용부), 저소득층생업자금(보건복지부), 소상공인지원(용자)(중소기업청), 버팀목대출보증(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든든학자금 대출(교육부)
  - ‘근로자생활안전자금대부’, ‘저소득층생업자금’, ‘소상공인지원(용자)’, ‘버팀목대출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의 자금 용자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생활자금 대출” 사업유형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생활자금 대출” 사업유형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생활자금 대출” 사업유형은 87개 있으며, 이 중 근로자생활안전자금대부, 저소득층생업자금, 소상공인지원(용자), 버팀목대출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84개로 총 예산은 397억 원

#### □ 긴급구호 지원사업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긴급구호 지원	3	2	6	502	59	25	2	2	5	502	52	24

- (주요 내용) 긴급구호 지원 사업은 소득상실, 각종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이용, 생계비,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의료비, 장제비, 주거비, 해산비, 긴급양곡, 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긴급복지(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생계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의료지원, 장애비지원, 주거지원,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보건복지부)

- ‘긴급복지(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생계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의료지원, 장애비지원, 주거지원, 해산비지원)’의 생계비 등 지원 내용이 유사
- ‘양곡할인’, ‘에너지바우처’의 양곡 및 연료비 지원 내용이 유사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생활비, 교육비, 복지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등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긴급구호 지원” 사업유형은 3개 있으며, 이 중 긴급복지(생계지원, 의료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2개로 총 예산은 2억 원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긴급구호 지원” 사업유형은 6개 있으며, 이 중 긴급복지(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생계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의료지원, 장애비지원, 주거지원, 해산비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개로 총 예산은 502억 원
- (시·군·구 사업) “긴급구호 지원” 사업유형은 59개 있으며, 이 중 긴급복지(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생계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의료지원, 장애비지원, 주거지원, 해산비지원), 양곡 할인, 에너지바우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52개로 총 예산은 24억 원

## 차. 재해 보상 영역

### □ 재해 구호 및 보상 유형

(단위: 개, 억원)

사업 유형	전체 사업						유사성 있는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재해 구호 및 보상	4	1	0	0	48	4	0	0	0	0	19	2

- (주요 내용) 재해 구호 및 보상 지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해구호물품, 개별구호물품, 화재발생가구 지원금, 임시 거주시설 지원, 주택손실 지원, 유족구호금, 의료서비스, 위로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유사 중앙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소방방재청), 의사상자지원(보건복지부), 농업인안전보험(농림축산식품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해양수산부)
  - '풍수해보험료지원'과 지자체의 주택손실 지원 내용이 유사
  - '의사상자지원'과 지자체의 위로금지급 내용이 유사
  - '농업인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이 유사
- 유사 사업 현황
  - (시·도 사업) “재해 구호 및 보상” 사업 유형은 4개 있으나, 이 중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음
  - (시·도-시군구매칭 사업) “재해 구호 및 보상” 사업 유형은 없음
  - (시·군·구 사업) “재해 구호 및 보상” 사업 유형은 48개이며, 이 중 풍수해 보험료지원, 의사상자지원, 농업인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19개로 총 예산은 2억 원





## 제4장

#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방안 모색 및 정책과제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방안 검토

제2절 정책 제언



# 4

##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 방안 모색 및 정책 과제

###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방안 검토

#### 1.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기준: 현실적 대안

##### □ 조정 기준의 설정

- 본 연구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업에 주목하여 착수됨.
  - 1만여개의 지자체 사업을 검토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앙 사업과의 조정은 보다 심도있는 준비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매우 초기단계의 작업으로서,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조정 대안을 만들기에는 4개월여의 연구기간에 제약이 있었음.
  - 중앙정부 사업간의 조정과 지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간 조정은 그 논리와 필요성의 측면이 상이함.
    - 즉, 중앙정부 사업의 유사성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고 할 때, 사업 대상, 예산, 지역간-대상자간 형평성 차원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있지만,
    - 지자체 사업과 중앙 사업의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예산 소요, 대상자 규모 및 범위, 지역 및 대상자간 형평성에 큰 변화를 초래
  -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조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해당 영역 및 사업특성별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대상규모(커버리

지), 급여수준을 고려한 충족도, 지역별 수준 파악 등 심도있는 검토에 기반해야 함.

- 따라서 지자체 사업의 기본 속성에 근거하여, 개략적으로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을 판단한 본 연구에서는, 조정 필요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여된 세부 과업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중인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사업 분야를 검토하고, 관련한 전국 사례의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이 요청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조정 필요사업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함.

- “2013년 이후 사보위 사무국의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된 지자체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해당 사업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요청 과업을 통해,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업 유형을 검토하고자 함.
- 정부에서 진행중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은 앞서 제2장 제3절에서 검토하였으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정홍원 외, 2014)」에 제시된 협의·조정 기준을 참조함.

○ 정홍원 외(2014)의 연구에서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으로서,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을 위시하여, 유사·중복·누락·편중의 기준으로서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불수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사회보장의 구성 체계인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 사회보험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5대 사회보험의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은 원칙적 불수용(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의료과잉 등 우려없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사안별 제한적 수용 가능)
  - 공공부조: 기초보장수급자의 추가 현금급여는 불수용, 현물급여는 제한적 수용

- 사회서비스: 지자체가 급여 및 대상자 추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신설·변경 제도는 사안별로 수용 검토하되, 추가 급여보다는 사용자 확대를 권고
- 이와 함께,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표 4-1-1〉 신설·변경 사회복지제도의 협약조정 기준

주요 기준	내용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추가급여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 불수용
유사·중복·누락·편중의 기준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불수용 • 신설 제도는 기존 제도의 수급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누락·편중 최소화
사회보험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5대 사회보험의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은 원칙적 불수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의료과잉 등 우려없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사안별 제한적 수용 가능
공공부조	기초보장수급자의 추가 현금급여는 불수용, 현물급여는 제한적 수용 •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급여는 기초보장 급여 보다 낮게 설정
사회서비스	지자체가 급여 및 대상자 추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신설·변경 제도는 사안별로 수용 검토하되, 추가 급여보다는 사용자 확대를 권고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 검토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사업은 원칙적 불수용 • 지자체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기존 사업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자료: 정홍원 외(2014: 164-165)의 내용을 정리 제시함.

〈표 4-1-2〉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협의조정 사례

분야	불수용 및 협의권고 사례
노인 소득지원	기초연금과 유사수당 성격인 노인의 현금성 급여로 판단되는 사업,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은 불수용 - 만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불수용) - 장수수당 (불수용) - 어르신 생일·명절 축하금 지급 (불수용)
노인 의료지원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수용, 본인부담금 경감등 의료비 증가로 연계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수용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본인부담금 지원 (추가협의: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재원 확보·분담 방안)
보육 지원	보육료·유학비 지원의 전면 확대로 유사·중복 및 추가 현금급여는 신중한 판단 필요 -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불수용) -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불수용)
출산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추가협의: 국가사업과 중복성 존재,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부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추가 지원등으로 변경)
공공부조	중앙부처에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복지 사각지대)은 수용

자료: 정홍원 외(2014: 165-170)의 내용을 정리 제시함.

○ 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이 발견된 지자체 자체사업의 조정 대상 기준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조정대상 사업유형	조정 방안
국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사업 조정 필요성 높음
신규 국가사업과의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사회보험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국가사업과 사업목적과 대상은 유사하지만, 다소 상이한 급여내용으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 유지 혹은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 국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 전국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현금 급여가 제공되는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
  - 지자체의 장수수당이 대표적이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지원, 생계비 지원, 수당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15년 7월)됨에 따라 대상의 확대, 사업 내용의 신설 및 명확화 등을 감안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감안
  - 지자체 사업으로서, 연탄쿠폰, 난방비 지원 등의 에너지효율화 관련사업(‘에너지바우처’ 도입에 따라 조정 필요), 취약계층(한부모, 저소득층, 장애인 등) 교육비 지원사업(‘교육급여’ 도입에 따라 조정 필요), 집수리 사업(‘주거급여’ 도입에 따라 조정 필요) 등이 해당
-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그러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의료과잉 등의 우려가 없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사안별로 제한적으로 유지)
  - 지자체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 및 서비스를 확대,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한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과 유사한 지자체의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지원 사업 등

- 노인돌봄사업의 일부 서비스와 유사한 지자체의 노인 목욕서비스, 경로 위생수당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자체의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등

## 2. 지자체 유사사업 유형과 조정 필요성 판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에 기초하여 도출한 조정 필요사업

○ 국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74개사업, 393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생활지원	장수수당	70	383
	장수수당, 효도수당	4	10

○ 시행 예정 국가사업과의 중복적 사업(192개사업, 838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교육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22	108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44	213
주거	주거비 지원	12	26
	주택시설 개선	76	113
	에너지(난방) 지원	38	378

○ 사회보험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163개사업, 219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요양돌봄	건강보험료 지원	155	15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8	60

○ 국가사업과 유사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한 효율화 필요 사업(1,067개사업, 8,547억원)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보호돌봄	아동 돌봄 지원	42	189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7	6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16	123
	보육료 지원	26	971
	보육교사 지원	58	2,043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20	181
	지역아동센터 지원	37	159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13	12
생활지원	위생 지원	25	13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6	9
	폭력 피해-예방 지원	32	20
	출산장려 지원	37	33
	장례 지원/ 묘비 정리	6	3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7	200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19	29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18	157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1	6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13	113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98	268
	노숙인 지원	19	79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6	33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3	5
교육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43	144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1	27
	장학금 지원	12	26
	장애인 교육 지원	35	21
건강의료	의료비 지원	21	356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지원	2	1
	건강증진 지원	4	31
	보장구 지원	6	7
요양돌봄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20	13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45	821
주거	주거자금 대출	7	62
고용	일자리 지원	5	25
	창업 지원	9	33
	직업능력-교육	16	45
	자활근로 지원	8	67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2

영역	사업 유형	사업수(개)	예산(억원)
	장애인 일자리	1	1
	노인 일자리	53	183
문화여가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5	6
	여가/문화활동 지원(성인)	1	0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	14	23
	여가/문화활동 지원(장애인)	1	1
생계	수당 지원	34	293
	생활비용 지원	42	393
	생활자금 대출	84	397
	간급구호 지원	59	528
재해보상	재해 구호 및 보상	19	2

## 제2절 정책 제언

### 1.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의 고려사항

□ 중앙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 검토와의 차별성 감안

○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체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판단하고 조정안을 모색하는 관점은 중앙정부 사업간의 그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중앙정부 사업간의 조정안 마련은 부처 및 부서 기능에 따른 중복성·유사성이 사업운영의 효율성, 수요자 입장의 혼돈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정 추진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사업간의 유사성이 발견된 경우, 조정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지방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 조정은 정부간 복지 책임의 범위, 복지사업을 통한 수요 충족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논의)가 불충분한 실정임.
- 즉, 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사업의 보충성(supplementary)에 대한 견해, 즉 보충적 급여·서비스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판단 존재

- 중앙정부 사업으로 욕구별 적정수준 혹은 최저수준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자체의 보충적 사업 수행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다만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공감과 합의가 필요함.

#### □ 지자체 사업과 중앙 사회보장사업간 비교에서의 고려 사항

- 지자체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도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사업구조와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성, 중복성이 있는 사업의 정비가 필요함.
  -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중앙사업의 적정수준 충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현금지원을 하는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한부모수당... 등도 중앙사업으로 부가욕구에 따른 필요 생활비 충족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원 하는 것이라면, 이를 단지 '중앙사업과 유사한 현금급여'라는 이유로 제어하기에는 곤란
  - '보충적 성격'의 지방사업을 제한하려면, 중앙사업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커버리지 및 급여수준 조정을 통한 기본 욕구 충족, 보장성의 확보).
    - 예컨대, 소득보장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보다 높일 것이니, 서비스 사업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등의 방향-원칙의 사전적 협의, 공유가 필요
    -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도, 동일 목적의 급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받기 보다는 통합하여 받는 것이 나올 것임. 그렇지만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 과정이 복잡해다 해도 각각 받는 상황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욕구영역별 충족도를 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업의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별로 복지 자원의 분포, 공급 현황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충

즉 욕구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적 사업 추진(재량권)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 지자체별로 제도별, 욕구영역별 공급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중앙-지방사업간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의 사업 조정 요구를 위해서는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성의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신설변경제도 협의조정” 과정에서는 사업의 유사중복성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혼란, 재정-전달체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므로, 이와 같이 다각적인 요소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검토 과제

- 지자체의 책임성, 자율성, 대응성,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이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사업간 조정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내 분절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 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 (중앙사업과 유사하지 않지만) 우선순위 높은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업인지,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시)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등의 추가 설치, 출산장려금 운영의 적절성 등
- 보다 정밀하고 심도있는 지자체 사업의 검토를 통한 유사사업 분석이 준비되어야 함. 이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영역·사업별 욕구 규모 및 충족 수준 파악
  - 사업운영 주체의 적절성 검토: 기획, 자원부담, 규제
  - 유관 제도와의 관계
  - 전달체계 고려
  - 지자체의 전반적 재정상태

- 제도의 성숙도
- 지역 형평성

○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시도 본청의 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시군구의 사업 실태 파악, 분석, 점검과 관련하여 권한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예시) 지자체별 복지적정기준의 설정 등을 통해 시군구 단위 사업 확충에 대한 근거있는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초 작업 필요

## 2.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의 발전 과제

### 가. 지자체 복지사업의 경향성과 방향성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지역특성, 자치단체장의 비전, 목적, 실행력, 지자체 재정지원 수준 및 보호수준 측면에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과 비슷하게 지역 주민의 빈곤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보완적, 보충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일반적임.
- 그러나 전국적,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사업과는 달리 제한적 예산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자원조달방식, 포괄범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간, 또는 지자체간 자체 복지사업간에 다양한 형태를 보임.
- 국가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집행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두 영역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중앙부처 복지사업만으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복지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다층적 안전망 구성이 필요하며,
-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자체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기에,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가 필수적임.

- 복지분야의 영역별 사업 확충의 필요성과 적정수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체사업 모두 검토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준비와 함께 현재의 복지사업간 전달체계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구조화가 필요함.

## 나. 지역 자체복지사업 설계와 운용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 지자체 복지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부처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주요한 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즉, 전국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규모와 수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설계 및 집행이 중요하며, 특히 복지서비스의 대국민 체감도 향상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성 제고를 통해 가능함.
  - 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그 내용이 획일적일 수 없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복지예산 수립과정에도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개발 노력이 요청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면서 복지사업 집행 과정에 통제성이 강조되고, 지역별 사업 성격에 차별성이 적은 경향임.
  -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 인구 속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복지사업 및 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며, 이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함(강운호, 2000; 박병현, 2003).
  -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취약한 재정상황 때문에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이는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면서 자체 복지사업의 취지가 경감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하고 자치단체들이 자체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이고 균일한 수준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복지서비스라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선호에 맞게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 복지서비스는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음(박병현, 2003).
-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편적 형평성보다는 특수한 형평성의 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필요함(김희연 외, 2012).
- 장애, 보육, 고령에 대한 사업은 지불능력 같은 보편적 형평성보다는 최소한의 접근성을 담보해주는 특수한 형평성(specific egalitarianism)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형평성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은 개인 또는 개별 가구의 특성도 파악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힘든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주민의 세부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파악하기 쉬운 자치단체가 적어도 특수한 형평성이 많이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복지 서비스의 다양성과 요구의 다양성을 반영한 특수한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개발해서 해당 자치단체

의 특성에 맞게 제공해야 할 것임.

○ 지자체 복지사업은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 집행될 수 있어야 하며, 급여기준 측면에서 중복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수급 충족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더해질 수 있어야 함.

- 물론 무분별한 복지사업의 설계와 복지재정 지출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중앙부처 복지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다원화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다양성은 지향되어야 함.

○ 복지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비스가 많음(김희연 외, 2012).

- 사회복지 서비스는 높은 경합성, 지역사회의 범죄나 빈곤층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혜대상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밀하게 구분하고 수혜수준 및 내용을 결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수준 파악,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공급 및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를 통한 확대발전이 요청됨.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혼란 또는 위험 이전에, 또는 이러한 위험을 겪는 동안에, 더 나아가 이러한 혼란 또는 충격 후에도 복지사업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복지사업 리질리언스(resilience)로 대언될 수 있음.

- 리질리언스는 “변화나 혼란을 흡수하고 원래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성에 근거한 능력의 척도”를 의미하며, 이는 생태학, 교육학, 심리학,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Holling, 1973; Resilience Alliance, 2005; 하현상 외, 2014).

- 이에 근거하여 복지 리질리언스는 복지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앙부처에

의존한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상자 측면의 자원부존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복지서비스 리질리언스의 결정요인은 가외성(redundancy),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내구성(robustness), 신속성(rapidity)으로 구성된 4Rs를 일반적으로 제시함(Resilience Alliance 2010; 하현상 외, 2014).
  - 복지서비스의 가외성(redundancy)은 복지서비스의 재원과 사업을 다양화(diversity)시키고 다원화(decentralization)시키는 것이 핵심임(Kavanagh, 2015).
  - 가외성(redundancy)은 복지서비스 리질리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사업 재정을 하나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화하여 단일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임.
  - 또한 운영메커니즘이나 운영방식을 다원화시켜서 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대체 전달체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모듈화(modularization)를 통하여 가능함.
  -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다양화시킴으로서 하나의 재원이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다양화시키고 동일한 목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다양한 선택권 및 대안을 제공하는 것임.
  - 또한, 복지서비스 기능의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킬 수도 있음. 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집권적 시스템이 아니라 다원화된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복지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원화된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복지재원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대치되는 논리이지만 복지서비스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과 서비스를 다원화시

키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됨.

- 효율성 중심, 집권적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는 이러한 복지서비스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재원 및 사업은 전달체계나 재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외성이 낮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재원이 없어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복원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복지서비스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가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복지 서비스와 재원의 리질리언스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복지서비스의 신속성은 높은 대응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동시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가져야 함.
-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들이 단순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집행 대리인이 아니라, 재량권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가능함.
- 또한 주민들이 찾아오거나 요청을 했을 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만들어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복지수요 및 재원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 중앙-지자체 정책연계 강화

□ 정책 여건의 변화와 현실

○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전통적 역할을 포함한 새

로운 역할로 확대되고 있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간에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 집행에 충실하고 현금급여 중심의 관리행정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포함하여 지자체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기획 및 관리 등 보다 스마트한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전통적인 공급자로서의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복지 체계 내에서의 중요 제공자 역할이 기대됨.

○ 그러나, 열악한 자체 재원과 인력, 국가복지사무에서의 적절한 권한부여 미비 등 관련 인프라의 확대는 요원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역할에 대한 기대만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임.

-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재원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체계 마련이라 할 수 있음.
- 협력적 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복지공급 주체간 역할 분담의 정립, 사업정보등의 연계·통합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적 관계증진이 필요함.

○ 관련 제도의 정비에서는 복지사무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 지방재정법 등의 정비를 통해 복지와 관련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재정 관리 등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사무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해 주어야 함.
- 또한, 지방재정법 등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복지재정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책임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 복지공급 주체간의 역할 분담 정립에서는 지자체 스스로의 기획력 강화를 통한 복지 주체성의 회복과 민간자원 연계 등 일선 현장에서의 공공(지방정부)-

민간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여 지자체 차원의 복지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운영을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형평성 제고와 회복력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조기 정착 및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찾을 수 있음.
- 또한, 지자체와 민간영역간의 건전한 파트너십을 통해 복지 공급체계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당 부분의 복지 공급을 민간영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등 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들이 지역사회 복지공급 구조에 보다 견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 등 주요 재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등 복지서비스 공급 참여도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들에게 지자체 복지 공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공익재단 등을 통한 재원 지원 등을 통한 관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제공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정보등의 공유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계획의 수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기획, 운영 과정의 어려움 중 하나는 정보의 부족임. 구체적인 복지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어려워 해당 사업의 효과적 구조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중앙정부-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복지사업 관련 정보들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복지사업들의 정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관련 통합정보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상호 이용함으로써 지자체 복지사업의 효과성은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으로서,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이 가능할 것임.
    - 국가적인 측면에서 복지사업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와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보다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
    - 복지사업 정보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 내역정보의 정확성과 현행화에 대한 신뢰성있는 복지사업 정보수집, 관리체계 마련이 필수적인 사안임.
    - 정보의 수집과 관리, 이용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간영역과의 협력체계 마련까지 도모할 수 있음.
- 국가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복지 공급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적절한 책임, 권한이 필요함. 그러나, 어느 한쪽의 관리와 규제, 통제와 역할이 아닌 협력적인 관계형성,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결국 원활한 복지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실질적인 복지공급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이 모색되어야 함.

□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정책조율, 지출추계와 복지계획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확대 개편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중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 졌으며, 향후 복지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급여간 연계, 제도간 연계, 전달주체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와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복지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정보공유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사회보장 급여의 보장결정이 기존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기계적 판단에서 급여신청자의 복지욕구, 문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례관리가 부각됨.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절차마련이 중요함.
- 사회보장부문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는데 핵심은 중앙부처 복지사업과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정보의 표준체계 마련하는데 있음.
  - 시스템간 표준화, 업무처리 비즈니스 처리절차에 대한 표준화, 유사중복 사업간 특화 기능 표준화, 기준정보의 표준화 등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을 위해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청됨.
  - 특히, 통합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을 표준화된 체계에서 통합적 관리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자원과 정보를 연계를 위한 표준체계와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 개별급여 집행방식 또는 칸막이식 집행은 통합적 집행을 위해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 바, 생애 주기별 위험요소 관리와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강혜규·강신욱·박세경·정경희·권소일·김용득·유태균·주무현·최영준·함영진(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김태완·정홍원·최현수·김동진·김영옥·박해욱·류영아·안혜영·신수민·이정은(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운호(2000).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213-227.
- 고제아·김재호·이근재·이상호·조성규·최병호(2013).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연·김보영·김인춘·홍경준·홍선미·임지영(2012). 한국적 복지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기본연구 2012-11, 경기개발연구원.
- 관계부처합동(2008).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관계부처합동.
- 박병현(2004).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시, 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상용·이창균·이효·서정섭(2010).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홍원·정경희·김성화·여유진·김동진·이소영·정은화·황도경·류진아·안효금(201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현상 외(2014).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지역발전연구. 23(2): 409-464.
- 함영진·김경준·김성은·이인수(2012).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특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Dahlgren, G. and Whitehead, M.(1991)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 Holling, C. S.(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2-23.
- Kavanagh, S.(2015). *Building a Financially Resilient Government through Long-Term Financial Planning*, The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 Resilience Alliance.(2005). Research on Social-Ecological Systems: A Basis for Sustainability.(<http://www.resalliance.org/1.php>.)